제외대국회개원

2020 조세수첩

Tax Statistics 2020





CONTENTS

한눈에 보는 조세지표

01 조세개요
1. 조세체계2
2. 조세의 분류3
3. 조세체계의 변천4
4. 조세수입8
5. 조세부담률9
6. 국제비교: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10
7. 국제비교: 조세구조16
8. 국제비교: 지방세 비중 등18
02 국세
9. 국세체계22
10. 주요 세제별 변천23
11. 국세수입26
〈소득세〉
12. 소득세 과세체계
13. 소득세 소득공제, 세액공제·세액감면32
14. 소득세 세율34
15. 소득세수 현황35
16. 소득세 과세 현황36
17. 소득세 평균 실효세율38
18. 국제비교: 소득세 과표구간수41
19. 국제비교: 소득세 최고세율42
20. 국제비교: 소득세 부담47

21.	소득세 최근 개정 동향48
〈법인	!세>
22.	법인세 과세체계56
23.	법인세 과세대상57
24.	법인세 최저한세58
25.	법인세율, 최저한세율59
	법인세수 현황60
27.	신고법인수 추이61
	법인세 과세 현황62
29.	법인세 신고 현황: 기업규모별64
30.	법인세 신고 현황: 과표구간별65
31.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66
32.	법인세 세액공제·세액감면68
33.	국제비교: 법인세 과표구간수69
	국제비교: 법인세 최고세율70
35.	국제비교: 법인세 부담75
	법인세 최근 개정 동향76
〈早フ	가치세〉
37.	부가가치세 과세체계80
	영세율, 면세82
39.	부가가치세 현황 및 통계84
40.	국제비교: 부가가치세율86
41.	국제비교: 경감세율89
	국제비교: 소규모사업자 과세특례90
	국제비교: 부가가치세 부담 ······91
	부가가치세 최근 개정 동향92
〈상속	÷세·증여세〉
45.	상속세 과세체계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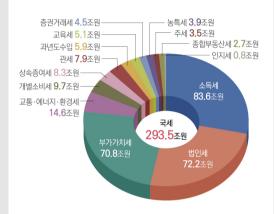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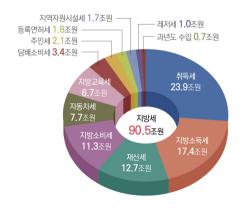
46.	증여세 과세체계98
47.	상속·증여세 현황100
48.	상속·증여세 실효세율 추이102
49.	국제비교: 상속·증여세 부담103
50.	국제비교: 상속·증여세제104
51.	상속·증여세 최근 개정 동향106
⟨ フ E	·사세목〉
52.	개별소비세110
53.	주세112
54.	교통·에너지·환경세113
55.	종합부동산세114
	증권거래세116
57.	인지세117
	교육세118
	농어촌특별세119
60.	관세120
	_
03	지방세
61.	지방세체계122
62.	지방세제의 변천123
63.	지방세 세목별 과세체계124
64.	지방세 수입126
65.	2018년 시도별 세목별 지방세 징수액128
〈지능	방세목〉
66.	취득세132
67.	지방소득세133
68.	재산세135

69.	자동차세 137
70.	지방소비세139
71.	담배소비세140
72.	지방교육세141
73.	등록면허세142
74.	주민세143
75.	지역자원시설세 ······144
76.	레저세146
04	조세지출
77.	국세감면 현황148
	국세 세목별 조세지출149
	예산분류별 조세지출152
	조세특례평가제도154
	조세지출 관리규정155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156
83.	주요 지방세 비과세·감면 항목 ······158
	지방세 세목별 비과세 감면액 현황159
	지방세 감면 관리 규정160
〈「조	세특례제한법」상 2020년 일몰도래항목〉
86.	2020년 일몰도래 항목162
〈부=	록〉
조세	용어 해설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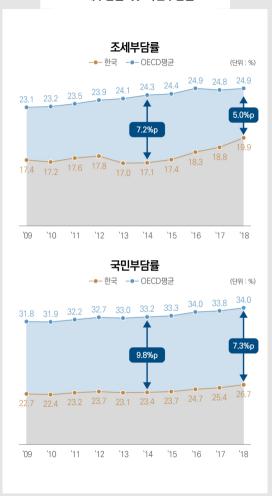
한눈에 보는 조세지표

국세·지방세 세목구성 및 세수입 현황(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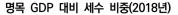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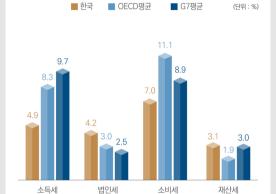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조세 비중





총 조세 대비 지방세 비중



* 총 조세= 국세+지방세

※ 꺽은선은 지방세가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단위: %)

국세·지방세 감면액



국세 감면액(세목별)



지방세 감면액(세목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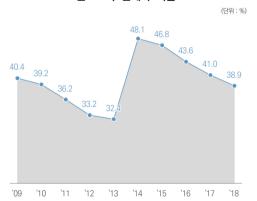
소득세 세입 및 면세자 비율

소득별 세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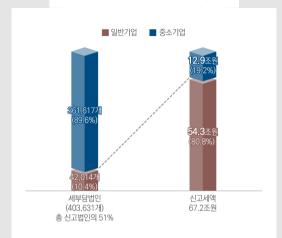
* 그외 항목은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사업·기타·퇴직 소득세가 포함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



* 근로소득 면세자는 근로소득자 중 납부할 세금(결정세액)이 없는 자

법인세 세부담 구조(2019년)





부가가치세 현황



*()는 비중 ※ 2019년기준 신고세액 = 매출세액-매입세액+가산세액-경감·공제세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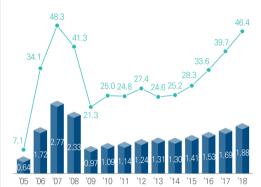
OECD국가들의 세율변화



부동산 보유세제 현황 및 추이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 및 결정세액

-●- 과세인원 ■ 결정세액 (단위: 만명,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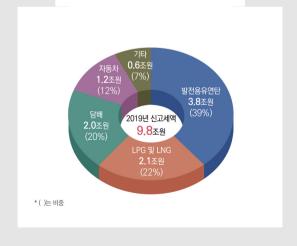
재산세 과세건수 및 부과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 추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별 신고세액



유류(휘발유·경유)의 조세부담

휘발유 10 당 조세부담



* 부가가치세는 세전 가격 392.08원/ Q (보통 휘발유, 2020, 6, 기준)을 바탕으로 계산

경유 1ℓ당 조세부담



* 부가가치세는 세전 가격 425.02원/ 및 (자동차용 경유, 2020. 6. 기준)을 바탕으로 계산

담배의 조세부담 등



* 부가가치세는 출고가격 1,176.5원을 기준으로 계산

전자담배



* 부가가치세는 출고가격 1,495.5원을 기준으로 계산 * 부가가치세는 출고가격 4,043원 (1๗ 기준으로 환산)을 바탕으로 계산

맥주·탁주의 1ℓ당 조세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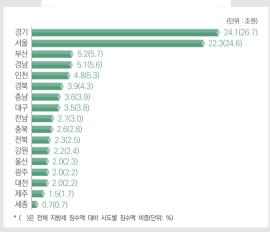




지방세 징수액 추이



시도별 지방세 징수액(2019년)



Part 1

조세개요



1 조세체계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 소득세 •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증권거래세 관세 농어촌특별세 (개별소비세, 관세 감면분)

국세 14개

25개 세목

지방세 11개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 지방소득세 • 레저세 취득세 • 주민세 • 등록면허세 • 지방소비세 (종업원분) • 재산세 • 담배소비세 • 주민세(재산분) • 자동차세(주행분) • 자동차세(소유분) • 지방교육세(레저세, • 지방교육세(취득세, 담배소비세분) 등록면허세, 재산세분) •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특정부동산분)

2 조세의 분류

구분	내용
국세와 지방세	과세권 주체에 따른 분류 - 국세: 중앙정부 - 지방세: 지방정부
내국세와 관세	과세대상 물건이 국경을 넘는 거래인지 국경 내의 거래인지에 따른 분류 - 내국세: 국경 내 거래 - 관세: 국경을 통한 거래
인세와 물세	납세의무자의 인적사정이 고려되는지에 따른 분류 - 인세: 소득세 - 물세: 소비세, 재산세 등
보통세와 목적세	세수의 사용용도가 특정되어 있는지에 따른 분류 - 보통세: 일반회계 세원 - 목적세: 특별회계 세원(예: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종가세와 종량세	과세대상을 측정하는 단위에 따른 분류 - 종가세: 화폐단위로 측정 - 종량세: 중량, 용량, 건수, 인원 등 [예: 주세의 주정(kV), 개별소비세 경마장 입장행위(1인1회 입장시)]
독립세와 부가세	독립된 세원의 존재여부에 따른 분류 - 부가세: 다른 조세에 일정률을 부가하여 과세하는 조세 (예: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 정부수립기(1948~1960년)

• 정부수립 이후 총 45개 세목으로 새롭게 출범한 조세제도는 전후복구기 재정수인 증대 목적의 세제개편 단행

한국전쟁 직전(1950년)

• 진전세

소득세제: 소득세. 법인세

수익세제: 지세. 영업세. 광세 재산세제: 상속세, 증여세

• 가전세

소비세: 주세, 청량음료세, 물품세, 유흥음식세, 직물세, 입장세, 전기가스세, 통행세, 관세 기타: 인지세 토세 마궈세 면허세

• 진전세

소득(수익)세제: 소득세. 법인세

수익세제: 영업세 재산세제: 상속세, 증여세, 자산재평가세,

자동차세, 등록세(한국전쟁), 광세, 토지수득세(한국전쟁) 특별소득세: 임시외화특별세

• 가전세

소비세: 주세 묵포세 유흥음식세 전기가스세, 입장세, 통행세, 과세

기타: 교육세, 마궈세, 톤세

한국전쟁 직전(1949년 지방세법 제정)

도세

국세부가세: 지세부가세, 영업세부가세, 광세부가세

독립세: 호별세, 가옥세, 면세지특별지세, 임야세, 도축세, 어업세, 차량세, 부동산취득세. 입정세

시·읍·면세

국세부가세: 지세부가세, 영업세부가세, 광세부가세 도세부가세: 호별부가세, 가옥세부가세,

면세지특별지세부가세. 부동산취득세

부가세독립세: 차량세, 특별영업세, 축견세, 선세, 교통세

• 모전세

서울특별시세·교육구교육세: 초등교육세 (호별세부가금, 특별부과금) 지방자치단체: 필요성 인정시 목적세 부과

전호보구기(1958년)

도세

국세부가세: 영업세부가세, 광세부가세 독립세: 호별세, 가옥세, 임야세, 도축세, 어업세, 취득세, 차량세, 특별행위세, 동력세, 면허세 (1954년), 선세

시·읍·면세

국세부가세: 영업세부가세. 광세부가세 도세부가세: 도의 11개 독립세목 전체에 대한 부가세

• 목적세

교육세: 초등교육세

(호별세부가금, 특별부과금) 기타목적세: 동세, 리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세

● 경제개박기(1961~1980년)

• 경제개발기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정책수단 기능강화 및 세제 간소화로 현행 조세체계의 기본구조 완성

1967년 세제개편

• 진전세

소득세제: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제: 상속세 및 증여세. 자산재평가세, 등록세, 부동산투기억제세

• 가전세

소비세: 주세, 물품세, 통행세, 입장세, 영업세, 전기가스세, 관세, 석유류세

유통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기타: 톤세

1976년 세제개편

• 진전세

소득세제: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제: 상속세 및 증여세. 자산재평가세, 부당이득세 (1974년)

• 가전세

소비세: 주세, 전화세(1974년).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관세 유통세: 인지세

• 모전세

방위세(1975년)

1967년 지방세제개편

도세

독립세: 취득세, 자동차세, 유흥음식세, 도축세, 마궈세, 면허세

• 서울특별시세. 부산시세

독립세: 취득세 자동차세 유흥음식세 도축세, 마권세, 면허세, 재산세, 농지세

목적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세 시·규세

도세부가세: 취득세부가세. 자동차세부가세. 유흥음식세부가세.

> 도초세부가세 면허세부가세

독립세: 재산세, 농지세

• 목적세

시·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도세 독립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 서울특별시세. 부산시세

독립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마권세

1976년 지방세제개편

시·규세

목적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독립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출세 마궈세

• 목적세

시·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 개방경제기(1981~2000년)

• 개방경제가 조세체계의 큰 변화없이 WTO 가입 등 개방경제기의 조세 환경 변화를 반영해 일부 세목신설(농어촌특별세 등)

	1981년 세제개편	1994년 세제개편
-	직접세 소득세제: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제: 상속세 및 증여세, 자산재평가세, 부당이득세	작점세 소득세제: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제: 상속세 및 증여세, 자산재평가세, 부당이득세, 토지초과이득세
, k	소비세: 주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1984년 지방세 개정	1990년 지방세제개편
지방세체계	도네 취득세, 등록세, 면하세 •특별시세·직할시세 취득세, 등록세, 면하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자세, 도축세, 마권세 -시·군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자세, 도축세, 마권세, 담배판매세 -목적세 특별시세·직할시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시·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시·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 도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마권세 * 특별시세·직할시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자세, 도축세, 마권세, 담배소비세 *시·군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농자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 자차게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 목적세 특별시세·직할시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시·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자차구세: 사업소세

외화위기 이호(2001~현재)

• 외화위기 이후 소득재분배 조세정책에 맞는 세목별 개편(FITC도인)과 부동산보유세제 강화(종합부동산세 신설)

2005년 세제개편

• 진전세

소득세제: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제: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 가전세

소비세: 주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관세

유통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모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세

2008년 세제개편

• 진전세

소득세제: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제: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소비세: 주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과세 유통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2001년 지방세제개편

도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경주·마권세 • 특별시세·광역시세 취득세, 등록세, 경주·마권세, 주민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시·규세

세

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 자치구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 모전세

도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2000)

특별시세·광역시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시·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자치구세: 사업소세

2010년말 지방세제개편

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 특별시세·광역시세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균등분), 지방소득세(소득분), 자동차세(주행세 흡수)

시·군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주행세 흡수)

• 자치구세

등록면허세. 주민세(재산분).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재산세(서울시와 공동과세)

• 모전세

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특별시세·광역시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4 조세수입

● 2019년 총조세는 383.9조원

- 총조세: ('10년) 226.9조원 → ('19년) 383.9조원
- 총조세 대비 지방세 비중: ('10년) 21.7% → ('19년) 23.6%





5 조세부담률

● 2019년 조세부담률은 전년대비 0.1%p 상승(19.9 → 20.0%)

- 국민부담률(잠정)은 전년대비 0.6%p 상승(26.7% → 27.3%)
- ▶ 조세부담률(%) = 총조세 (국세+지방세)/명목GDP × 100 국민부담률(%) = (총조세+사회보장기여금)/명목GDP × 100

(단위: %)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국세부담률	지방세부담률
2010	17.2 [22.4]	13.4	3.7
2011	17.6 [23.2]	13.9	3.8
2012	17.8 [23.7]	14.1	3.7
2013	17.0 [23.1]	13.5	3.6
2014	17.1 [23.4]	13.1	3.9
2015	17.4 [23.7]	13.1	4.3
2016	18.3 [24.7]	13.9	4.3
2017	18.8 [25.4]	14.5	4.4
2018	19.9 [26.7]	15.5	4.4
2019	20.0 [27.3]	15.3	4.7

주: SNA 2015년 기준 경상 GDP 성장률을 적용하여 산출

자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6 국제비교: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 2018년 우리나라 19.9%, OECD 24.9%, G7 25.0%

• 국민부담률, 2018년 우리나라 26.7%, OECD 34.0%, G7 35.5%

(단위: %, %p)

	(E11-70, 70p,				
	2009	2010	2011	2012	2013
한국	17.4	17.2	17.6	17.8	17.0
[국민부담률]	[22.7]	[22.4]	[23.2]	[23.7]	[23.1]
OECD평균	23.1	23.2	23.5	23.9	24.1
[국민부담률]	[31.8]	[31.9]	[32.2]	[32.7]	[33.0]
G7평균	23.0	23.1	23.7	24.2	24.5
[국민부담률]	[33.2]	[33.2]	[33.7]	[34.4]	[34.9]
미국	16.7	17.3	18.4	18.6	19.4
일본	15.3	15.6	16.1	16.5	17.1
영국	25.1	26.3	27.0	26.2	26.2
프랑스	25.2	26.0	27.1	27.9	28.6
독일	22.2	21.3	21.9	22.5	22.9
이탈리아	28.9	28.8	29.0	30.8	30.9
캐나다	27.5	26.4	26.3	26.5	26.4

주: 1. 2020년 4월 28일 가입한 콜롬비아를 포함한 OECD 37개국 기준

자료: OECD Tax Database

^{2.} 일본, 호주는 2018년 자료 미발표

^{3.} 우리나라는 SNA 2015년 기준 경상 GDP 성장률을 적용하여 산출

^{4. 2018}년 OECD평균 및 G7 평균은 미발표된 일본과 호주는 제외하였고, 우리나라는 SNA 2015년 기준 경상 GDP 성장률을 적용한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산출

(단위: %, %p)

2014	2015	2016	2017	2018	2018-2009
17.1	17.4	18.3	18.8	19.9	2.5
[23.4]	[23.7]	[24.7]	[25.4]	[26.7]	[4.0]
24.3	24.4	24.9	24.8	24.9	1.8
[33.2]	[33.3]	[34.0]	[33.8]	[34.0]	[2.2]
24.6	24.9	24.9	25.2	25.0	2.0
[35.0]	[35.3]	[35.4]	[35.7]	[35.5]	[2.3]
19.8	20.0	19.7	20.6	18.2	1.5
18.3	18.6	18.3	18.8	_	3.5
25.9	26.1	26.5	26.9	27.1	2.0
28.5	28.5	28.7	29.3	30.0	4.8
22.8	23.1	23.3	23.3	23.8	1.6
30.5	29.9	29.5	29.4	29.0	0.1
26.6	28.0	28.3	28.2	28.4	0.9

● 조세부담률 격차: 한국 vs. OECD vs. G7

- OECD평균과의 격차: '09년 5.7%p → '18년 5.0%p
- G7 평균과의 격차: '09년 5.6%p → '18년 5.1%p





- 주: 1. 2020년 4월 28일 가입한 콜롬비아를 포함한 OECD 37개국 기준
 - 2. 일본, 호주는 2018년 자료 미발표
 - 3. 우리나라는 SNA 2015년 기준 경상 GDP 성장률을 적용하여 산출
- 4. 2018년 OECD평균 및 G7 평균은 미발표된 일본과 호주는 제외 자료: OECD Tax Database(2020.7.31. 기준)

● 국민부담률 격차: 한국 vs. OECD평균 vs. G7평균

- OECD평균과의 격차: '09년 9.1%p → '18년 7.3%p
- G7 평균과의 격차: '09년 10.5%p → '18년 8.8%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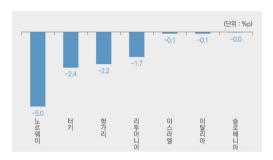




- 주: 1. 2020년 4월 28일 가입한 콜롬비아를 포함한 OECD 37개국 기준
 - 2. 일본, 호주는 2018년 자료 미발표
 - 3. 우리나라는 SNA 2015년 기준 경상 GDP 성장률을 적용하여 산출
- 4. 2018년 OECD평균 및 G7 평균은 미발표된 일본과 호주는 제외 자료: OECD Tax Database(2020.7.31, 기준)

● OECD 국가별 조세부담률 변화: 2009년 vs. 2018년

- 하락: 7개국, 상승 30개국
- ▶ 하락 7개국: 노르웨이, 터키, 헝가리, 리투아니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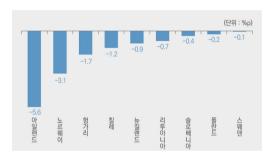
▶ 상승 30개국: 그리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프랑스, 한국 등



- 주: 1. 2020년 4월 28일 가입한 콜롬비아를 포함한 OECD 37개국 기준
 - 2. 일본, 호주는 2018년 자료 미발표
 - 3. 우리나라는 SNA 2015년 기준 경상 GDP 성장률을 적용하여 산출
- 4. 2018년 OECD평균 및 G-7 평균은 미발표된 일본과 호주는 제외 자료: OECD Tax Database(2020.7.31, 기준)

● OECD 국가별 국민부담률 변화: 2009년 vs. 2018년

- 하락 7개국, 상승 30개국
- ▶ 하락 7개국: 아일랜드, 노르웨이, 헝가리 등



▶ 상승 30개국: 그리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프랑스, 한국 등



- 주: 1. 2020년 4월 28일 가입한 콜롬비아를 포함한 OECD 37개국 기준
 - 2. 일본, 호주는 2018년 자료 미발표
 - 3. 우리나라는 SNA 2015년 기준 경상 GDP 성장률을 적용하여 산출
- 4. 2018년 OECD평균 및 G-7 평균은 미발표된 일본과 호주는 제외 자료: OECD Tax Database(2020.7.31, 기준)

7 국제비교: 조세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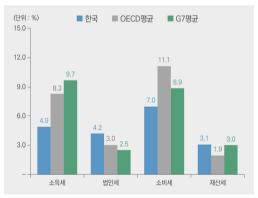
● 명목GDP 대비 세목별 세수비중

• 2018년 기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대비 소득세·소비세 비중이 낮고, 법안세·재산세 비중은 높음

〈2018년 기준〉

(단위: %)

	한국	OECD평균	G7평균
소득세	4.9	8.3	9.7
법인세	4.2	3.0	2.5
소비세	7.0	11.1	8.9
재산세	3.1	1.9	3.0
기타	0.8	0.6	0.9



주: 우리나라는 SNA 2015년 기준 경상 GDP를 적용하여 산출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2020.7.31, 기준)

주요 세목 세율 추이







주: 소득세와 법인세는 지방세등 포함 최고세율, 부가가치세는 표준세율 기준임 자료: OECD Tax Database(2020.7.31, 기준)

8 국제비교: 지방세 비중 등

● 총조세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

- OECD 국가 중 연방제 국가는 자주재정권이 강한 측면이 있어 지방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비연방제 국가는 낮은 모습
- ※ 단, 지방이전재원 고려시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비중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규모는 다름
- 연방제 국가(9개국)

(단위: %)

	미국	독일	평균
국세	52.8	47.8	67.7
지방세	47.2	52.2	32.3

주: 1. 2018년 기준

2. 호주는 자료 미발표로 2017년 값을 적용하여 평균 산출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2020.7.31. 기준)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비연방제 국가(28개국)

(단위: %)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	평균
국세	93.8	71.5	61.1	77.7	84.9
지방세	6.2	28.5	38.9	22.3	15.1

주: 2018년 기준값임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2020.7.31. 기준)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요국의 특징적인 지방세 세목

관광·숙박세 렌트카세 보험(영업)세(뉴욕주) 자동차등록 부가세(뉴욕주) 고속도로 사용세(뉴욕주) 오염세(미네소타주)
• 견세 • 유흥장세 • 사냥 및 낚시세 • 음료수세 • 야영장세: 장기캠핑자 • 말의 보유 과세 • 숙박세(베를린, 함부르크)
• 건축물 없는 토지의 토지세에 부가되는 부가세 • 기업 토지 부담금 부가세 • 청소세: 도로 연변의 건물 소유자 • 공가세: 거주기간 30일 이내로 2년 이상 빈 집 • 여행세: 관광객에 부과, 파리는 10%의 데파르트망세 부과
자동차 중량세 항공기 연료세 전원개발촉진세 석유석탄세 숙박세 낚시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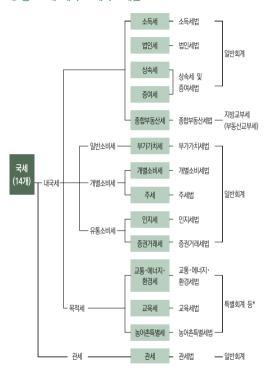
Part 2

국 세



9 국세체계

● 총 14개 세목: 1세목 1세법



- * 특별회계 등
-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시설특별회계(73%), 환경개선특별회계(2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2%)
- 교육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해당 연도 예산기준, 2022년까지)
- 농어촌특별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0 주요 세제별 변천

● 소득세제

• 공평과세 실현(종합과세제도 도입)과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2008년 근로장려세제 도입 등)에 맞춰 시기별로 변화

50~60년대	1949	소득세법 제정 : 불완전 종합소득 과세
70~80년대	1974	종합과세제도 재도입 (8-70%, 16단계 초과 누진세율) 공명라세
90년대	1994	실현을 위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도입, 최고세율 인하(40%) 과표구간 4단계로 축소
2000년	2008	근로장려세제도입(EITC) 소득재분배 기능강화
이후	2014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 법인세제

• 1949년 독립세목화 된 이후 산업지원 정책수단(임시투자세액공제) 으로의 기능과 경제구조변화(고용증대세제)에 따라 변천

50~60년대	1949	법인세법 제정 : 소득세에서 분	블리
70~80년대	1977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신설	1960년대 이후 산업지원 정책수단(조세지원)의 기능 강화
90년대	1991	최저한세 도입, 적정유보초과소득세 도입 (2002년 폐지)	최소한의 조세부담
2000년 이후	2007 2015 2018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 법인세율 인상 / 고용증대세제	신설

● 소비세제

• 개별소비세제 체계를 유지해 오다 1976년 부가가치세 도입 등 소비세제 간소화 이후 과세체계상 큰 변화 없이 과세합리화(과세 특례제도 폐지)를 위한 개편 중심으로 변천

50~60년대	1961 영업세 전면개편(기존 32개 업종을 18개 업종으로 단순화) 물품세 소매과세와 특별과세물품세 폐지 - 제조정반출과세
70~80년대	부가가치세 1976 <mark>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정(1977년 시행)</mark> 도입으로 소비세제 간소화
90년대	1994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세 신설 1996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도압(기준금액 1억 5천만원)
2000년 이후	2000 <mark>부기간</mark> 서 과서특례저도 폐지 주세 증류주 세울 72%로 통일, 맥주 세율 72%(종전150%) 2013 <mark>부기간</mark> 처세 부가가 차세법 전면개정(알기 쉬운 법령정비 일환) 2014 개별소비세 담배를 과세대상에 포함

● 재산세제

• 경제 사회의 환경변화에 따른 국가정책에 맞춰(부동산투기억제세, 종합 부동산세 도입) 변천

양도 소득세	1951 전시세제 (조세특례제한법) 도입	1977 1세대 1주택 가운데 고급주택 과세로 전환	1989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 신설			2018 다주택자 중과세 재도입	2020 단기 양도차익 환수,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50~60년대	70~80년대	90년대		2000	년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	1950 상속세법 제정 증여세법 제정	1980 포괄주의 과세폐지, 열거주의 도입		2004 완전 포괄주의 과세제도 도입	2011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2017 신고세액공 단계적 축소 (10%)7%)	<u>. </u>
종합 부동산세				2005 종합 부동산세 시행	2008 인별 합산으로 전환	2018 다주택자 중과세 도입 등	2020 법인·다주택자 중심 세율인상 등

● 국세 세목 변천

	'70	'78	'79	'82	'91	'94	'99	'01	'02	'03	'04	'05	'08 이후
자산 재평가세	'49 →	-	-	-	→	-	→	폐지					
부당이득세	'49 →	-	-	-	→	-	→	-	→	-	→	→	폐지
토지초과 이득세	'49 →	-	-	-	→	→	폐지						
증권거래세				도입	-	-	-	-	-	-	-	-	→
전화세	'74 →	-	-	-	-	-	→	-		부가가	치세0	통합	<u> </u>
물품세	'49 →	폐지											
통행세	'49 →	폐지											
입장세	'49 →	폐지											
전기가스세	'49 →	폐지											
영업세	'49 →	폐지											
석유류세	'49 →	폐지											
방위세	'75 →	-	-	-	폐지								
교육세				도입	-	-	-	-	-	-	-	-	→
교통세						도입	→	-	→	-		·에너 세로	
농어촌 특별세						도입	→	-	-	-	-	-	-
종합 부동산세						도입	→	→	→	→	→	→	→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세제사」, 2012.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리

11 국세수입

● 2019년 국세수입은 293.5조원으로, 2018년 대비 0.1조원 (-0.0%) 감소

(단위: 조원,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국세	177.7 [8.0]	192.4 [8.3]	203.0 [5.5]	201.9 [-0.5]	205.5 [1.8]	217.9 [6.0]
소득세	37.5	42.3	45.8	47.8	53.3	60.7
법인세	37.3	44.9	45.9	43.9	42.7	45.0
상속·증여세	3.1	3.3	4.0	4.3	4.6	5.0
부가가치세	49.1	51.9	55.7	56.0	57.1	54.2
개별소비세	5.1	5.5	5.3	5.5	5.6	8.0
교통·에너지· 환경세	14.0	11.5	13.8	13.2	13.4	14.1
관세	10.7	11.0	9.8	10.6	8.7	8.5
종합부동산세	1.0	1.1	1.1	1.2	1.3	1.4
주세	2.9	2.5	3.0	2.9	2.9	3.2
기타	17.2	18.3	18.5	16.5	15.8	17.8

주: 1) []는 전년대비 증가율, ()는 전체 국세대비 비중임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및 기획재정부 발표 ^{「2019}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2020.2.10.)

^{2) 2009~2019}년은 실적치, 2020년은 추경예산 기준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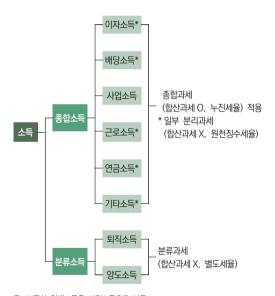
2016	2017	2018	2019		2020 예산
242.6 [11.3]	265.4 [9.4]	293.6 [10.6]	293.5 [-0.0]	(100.0)	279.7
68.5	75.1	84.5	83.6	(28.5)	88.5
52.1	59.2	70.9	72.2	(24.6)	58.5
5.4	6.8	7.4	8.3	(2.8)	8.4
61.8	67.1	70.0	70.8	(24.1)	64.6
8.9	9.9	10.5	9.7	(3.3)	9.5
15.3	15.6	15.3	14.6	(5.0)	15.5
8.0	8.5	8.8	7.9	(2.7)	7.7
1.3	1.7	1.9	2.7	(0.9)	3.3
3.2	3.0	3.3	3.5	(1.2)	3.2
18.1	18.6	21.1	20.2	(6.9)	20.6

Part 2

국 세 소득세

12 소득세 과세체계

- 소득세법상 열거된 사업·근로·이자 등 8가지 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분류과세
 - 종합과세: 과세기간 중 발생소득을 합산, 누진세율 적용
 - * 분리과세: 일부 소득은 별도의 원천징수로 납세 종결 ①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14% ②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14% ③ 의료목적 등 연금소득 3~5% ④ 복권당첨금 등 20%/30% 등
 - 분류과세: 소득이 장기간 집적·형성된 점을 감안, 별도 과세



주: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

● 결정세액

• 결정세액 = 과세표준 × 소득세율 - (세액공제 + 세액감면)

종합소득금액 ¹⁾	퇴직소득금액 ²⁾	양도소득금액 ³⁾
(-)종합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 퇴직소득 과세표준 ⁴⁾	= 양도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 기본세율 (연분연승법 ⁵⁾ 적용)	× 양도소득 세율
= 종합소득 산출세액	= 퇴직소득 산출세액	= 양도소득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공제

- = 종합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결정세액 결정세액 결정세액
- 주: 1)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필요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근로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제외, 연금소득 의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제외)
 - 2)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 퇴직소득은 제외
 - 3)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

(-) 세액감면

- 4) 퇴직소득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한 후 이를 근속연수로 나눈 후 12배수한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해 도출
- 5)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고, 환산배수(12배)로 나눈 후 근속연수를 곱함

(-) 세액감면

13 소득세 소득공제, 세액공제·세액감면

● 소득공제

단.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조특법 제132조의2

• 난, 소=	등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조특법 제132조의2)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인당 150만원)
인적공제	• 추가공제: 경로(100만원), 장애인(200만원), 부녀자(50만원), 한부모 공제(100만원)
연금보험료 공제	• 공적연금 관련 법상 기여금 및 개인부담금(전액)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공제	• 연금소득자만 해당(이자비용 상당액, 200만원내)
	• 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자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전액)
특별공제	주택자금공제: 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무주택 근로자, 40%) 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무주택, 1주택 근로자) 등 * 단, 한도 설정: 주택청약종합저축+①, 30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①+②, 500만원
조특법상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무주택 근로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40%) 산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차감 후 15~40% 공제) *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공제한도 총급여 수준별 연 200~300만원(단 전통시장·대중교통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각각 100만원 한도 추가)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사업소득 4천만원/1억원 기준, 500만원/300만원/200만원)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2년내 10%) * 우리사주조합 출자 및 기부금(전액) * 출자는 근로소투자에 한함, 연 400만원 (창업·벤차/업은 1,500만원) 한도 고용유지중소기업 상시근로자(전년대비 임금삭감액의 50%) * 고용유지중소기업 상시근로자(전년대비 임금삭감액의 50%) * 참는 기급수감액의 50%) * 중요구기업 상시근로자(전년대비 임금삭감액의 50%) * 중요구기업 상시근로자(전년대비 1원급수업 50%) * 중요구기업 50% * 중요구기업 50%
	* 보증규사당보기 합 '중시는보기(전한테미 점급각검색의 30%) * 단, 연 1,000만원 한도

주: 박물관·미술관 사용분과 관련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2019.7.1.부터 시행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130만원 기준 55%/30% * 단 50~74만원 한도
- (자녀세액공제) 다자녀(2자녀 각 15만원, 3자녀부터 30만원) 출생 및 입양(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 아동수당 도입으로 6세이하 아동은 다자녀공제 미적용
- (트별세액공제)
 - ①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출액의 15% 공제 * 단. 1천만원 초과 기부금 30%
 - ② 보장성 보험료. 연금저축: 지출액의 12% 공제 * 단. 장애인 15% 공제
 - ③ 표준공제: 근소자 13만원, 사업자 7만원 공제 * 단 성식사업자 12만원 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 퇴직연금 납입액의 12%
 - * 종합소득 4.000만원 또는 급여 5.500만원 이하 15%, 단, 소득규모별 300~400만원 한도
 - * 종한소들이 있으며 금융소들 한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50세 이상 거주자는 연금 저축계좌 한도 600만원, 퇴직연금계좌와 합산시 900만원 (2020년 1월 1일 이후 납부분 적용)
 - **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300만원한도
- (배당세액공제) 종합소득에 배당가산 된 배당소득의 11%
-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 사업자의 복식기장 시 산출세액 20% * 단. 100만원 한도
- (전자신고 공제) 전자신고된 납부세액에서 2만원 공제
- (현금영수증가맹점 공제) 발급 건당 20원
- (재해소실세액공제) 재해시 사업용자산(토지 제외)의 20% 이상 상실한 경우 상실비율에 따라 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에서 소득세 납부한 국외 원천소득의 비중만큼 공제
- (기타 조특법상 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R&D비용세액 공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 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
- (소득세법상 세액감면) '정부간 협약에 의해 파견된 외국인 급여'.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거주자의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 사업 소득

세액 감면

세액

• (조특법상 세액감면)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조합 배당소득',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산림개발소득 세액감면'등

14 소득세 세율

● (소득세 세율) 7개 과세표준 구간, 초과누진세율

(단위: %)

	(=11: 70)
과세표준 구간	현 행
0 ~ 1,200만원	6
1,200 ~ 4,600만원	15
4,600 ~ 8,800만원	24
8,800만원 ~1.5억원	35
1.5~3억원	38
3~5억원	40
5억원 초과	42

● (양도소득세율) 토지·건물·부동산 양도차익과 주식양도차익에 다르게 적용

(단위: %)

	구 분		현 행		
	2년 0	상 보유	기본세율		
	1~ 2 ⁱ	년 보유	토지 : 40, 주택 : 기본세율		
토지	1년 🛭	l만 보유	토지: 50, 주택: 40		
· 건물	1세다	1 3주택	기본세율 +20%p *조정대상지역		
· 부동산	1세다	1 2주택	기본세율 +10%p *조정대상지역		
	비사업	용 토지	기본세율 +10%p		
		등기	70		
	기타자신	<u>+</u>	기본세율		
		대기업 1년 미만	30		
	대주주	대기업 1년 이상	3억이하: 20, 3억초과 25		
주식	(상장·비상장)	중소기업	3억이하: 20, 3억초과 25 *20.1.1.이후		
	소액주주	대기업	20		
	(비상장)	중소기업	10		
	파 생 상	품	20		

- 주: 1. 기본세율은 현행 6~42%의 누진 소득세율을 뜻함
 - 2.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제외) 및 일부 1세대 2주택(이사·상속·결혼 등),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등은 비과세
 - 3. 파생상품은 탄력세율 적용하여 현재 10%

15 소득세수 현황

● 소득세는 2019년 83.6조원, 전체 국세대비 28.5%

(단위: 조원, %)

연도	국세(A)	소득세(B)	비중(B/A)
2010	177.7	37.5	(21.1)
2011	192.4	42.3	(22.0)
2012	203.0	45.8	(22.6)
2013	201.9	47.8	(23.7)
2014	205.5	53.3	(25.9)
2015	217.9	60.7	(27.9)
2016	116 242.6 68.5		(28.2)
2017	265.4	75.1	(28.3)
2018	293.6	84.5	(28.8)
2019	293.5	83.6	(2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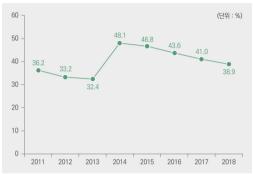
16 소득세 과세 현황

● 종합소득자 vs.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자	근로소득자		
과세 인원	• 691.1만명	• 1,857.8만명		
면세자	• 79.9만명 *소득 1억원 초과 3,263명 *소득 3억원 초과 339명 ※ 종합소득신고 (필요경비 제외) 기준	• 721.9만명 (면세자 비중 38.9%) *소득1억원초과 1,301명 *소득3억원 초과 : 해당 정보 없음		
전체소득	• 213.7조원	• 681.6조원		
1인당 평균소득	• 3.1천만원 * 비과세, 필요경비 등이 제외된 금액임	• 2.7천만원 * 비과세,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 기준 (이를 포함, 3.7천만원)		
비과세	• 해당정보 없음	• 4.1조원(급여총계의 0.6%)		
1인당 평균세액	• 5.2백만원	• 3.4백만원		
1인당 평균 감면액	• 소득공제 5.2백만원 • 세액공제 0.8백만원 세액감면 1.2백만원	• 소득공제 7.1백만원 *비과세, 근소공제 8.5백만원 별도 • 세액공제 0.8백만원 세액감면 0.8백만원		
평균 실효세율	• 평균 14.9%	• 평균 5.7%		

주: 2018년 소득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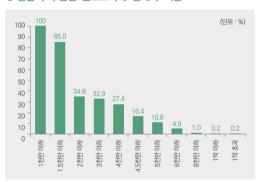
●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



주: 근로소득 기준

자료: 국세청, 「2019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총급여 구간별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



주: 2018년 총급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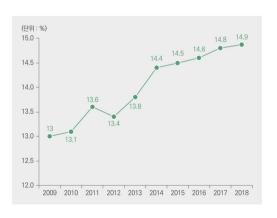
17 소득세 평균 실효세율

● 종합소득자, 2018년 소득 기준 14.9%

실효세율(%) = (결정세액/종합소득금액) × 100
 ※ 종합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이월결손금 + 배당기산액 등

(단위: 마면 조워 %)

	(E11. E6, ±2,					
과세표준 규모별	인원	종합소득 금액(A)	결정세액 (B)	실효세율 (B/A)		
~1,200만원	422	31.0	0.5	1.5		
~4,600만원	188	55.9	3.2	5.7		
~8,800만원	45	32.8	3.6	11.1		
~1.5억원	19	23.4	3.9	16.7		
~3억원	11	23.6	5.4	22.9		
~5억원	3	12.8	3.6	28.2		
5억원 초과	3	34.2	11.6	33.8		
합계 및 평균	691	213.7	31.8	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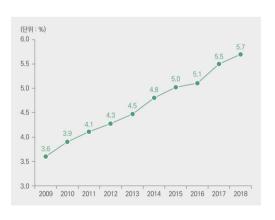


● 근로소득자, 2018년 소득 기준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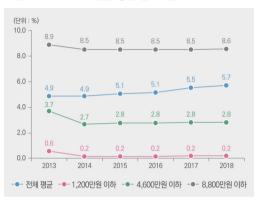
• 실효세율(%) = (결정세액/급여총계) × 100 ※ 급여총계는 비과세 등 차감 없이 모든 근로소득의 합계액임

(단위: 만명, 조원, %)

	(211 23, -2, 11					
과세표준 규모별	인원	급여총계 (A)	결정세액 (B)	실효세율 (B/A)		
~1,200만원	945	132.7	0.3	0.2		
~4,600만원	714	317.0	8.9	2.8		
~8,800만원	153	137.7	11.8	8.6		
~1.5억원	34	48.1	7.2	15.0		
~3억원	9	20.7	4.7	22.6		
~5억원	2	7.0	2.0	28.4		
5억원 초과	1	10.0	3.4	34.4		
합계 및 평균	1,858	673.2	38.3	5.7		



● 근로소득자 과표구간별 평균 실효세율 추이





18 국제비교: 소득세 과표구간수

과표		2009	2019			
개수	국가수	국가명	국가수	국가명		
1		체코,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3개국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2개	5개국	덴마크, 헝가리, 아일랜드, 폴란드, 영국		덴마크,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3개	3개국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스웨덴	3개국	라트비아, 스웨덴, 영국		
47#	9개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독일, 그리스, 한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페인, 터키	4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터키		
5개	5개국	호주,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10개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스페인		
6개	3개국	일본, 미국, 이스라엘	0개국	-		
7개	1개국	포르투갈	7개국	한국, 오스트리아, 칠레, 이스라엘, 일본, 포르투갈, 미국		
8개	2개국	칠레, 멕시코	0개국	-		
11개	1개국	스위스	2개국	멕시코, 스위스		
17개	1개국	룩셈부르크	0개국	-		
19개	0개국	-	1개국	룩셈부르크		

자료: OECD Tax Database 자료(2020.7.31. 기준)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9 국제비교: 소득세 최고세율

- (중앙정부기준)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최고세율 42%는 OECD 국가 중 14위 수준
 - 2019년 OECD 평균 최고세율 35.9%

(단위: %)

	2010	2011	2012	2013	2014
프랑스	41.0	1.0 41.0 45.0 45.0		45.0	
독일	45.0	45.0	45.0	45.0	45.0
일본	40.0	40.0	40.0	40.0	40.0
영국	50.0	50.0	50.0	45.0	45.0
이탈리아	43.0	43.0	43.0	43.0	43.0
한국	35.0	35.0	38.0	38.0	38.0
미국	35.0	35.0	35.0	39.6	39.6
캐나다	29.0	29.0	29.0	29.0	29.0
G7 주요국 평균	₫ 40.4 40.4		41.0	40.9	40.9
OECD 평균	35.1	34.5	35.0	35.5	35.5

주: ()는 OECD 35개국 중 순위임

자료: OECD Tax Database 자료(2020.7.31. 기준)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단위: %)

2015	2016	2017	20	18	20	19
45.0	45.0	45.0	45.0	(7)	45.0	(7)
45.0	45.0	45.0	45.0	(7)	45.0	(7)
45.0	45.0	45.0	45.0	(7)	45.0	(7)
45.0	45.0	45.0	45.0	(7)	45.0	(7)
43.0	43.0	43.0	43.0	(13)	43.0	(13)
38.0	38.0	40.0	42.0	(14)	42.0	(14)
39.6	39.6	39.6	37.0	(17)	37.0	(17)
29.0	33.0	33.0	33.0	(21)	33.0	(21)
41.7	42.2	42.2	41.9	-	41.9	-
35.5	35.8	35.7	35.7	-	35.9	-

● (지방세 등 포함기준¹)) 2019년 우리나라 최고세율 46.2%는 OECD 국가 중 18위 수준

• 2019년 OECD 평균 최고세율 42.8%

(단위: %)

	2010	2011	2012	2013	2014
일본	50.0	50.0	50.0	50.8	50.8
프랑스	46.7	50.5	54.4	54.5	54.5
캐나다	46.4	46.4	48.0	49.5	49.5
독일	47.5	47.5	47.5	47.5	47.5
이탈리아	50.0	50.0	50.0	50.8	50.8
미국	41.9	41.9	41.8	46.3	46.3
영국	50.0	50.0	50.0	45.0	45.0
한국	38.5	38.5	41.8	41.8	41.8
G7 주요국 평균	46.8	47.6	48.4	48.7	48.8
OECD 평균	40.6	40.5	41.0	41.9	42.1

주: ()는 OECD 36개국 중 순위로 2009 및 2018년 기준임 자료: OECD Tax Database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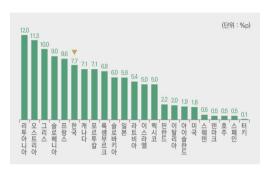
¹⁾ OECD국가들의 지방정부에서 자체재원으로 운영하는 지방소득세와 소득세에 부과되는 각종 부가세(surtax) 포함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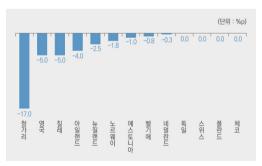
2015	2016	2017	2018	2019	순위		
2015	2016	2017	2018	2019	2010	2019	변동
55.9	55.9	55.9	55.9	55.9	(6)	(2)	4 †
54.5	54.5	54.5	55.4	55.4	(12)	(4)	8†
49.5	53.5	53.5	53.5	53.5	(12)	(5)	7 †
47.5	47.5	47.5	47.5	47.5	(9)	(16)	7↓
48.8	48.8	47.2	47.2	47.2	(15)	(17)	2↓
46.3	46.3	46.3	43.7	43.7	(20)	(22)	2↓
45.0	45.0	45.0	45.0	45.0	(7)	(21)	14↓
41.8	41.8	44.0	46.2	46.2	(26)	(18)	8†
49.6	50.2	50.0	49.0	49.7			
42.2	42.5	42.4	42.3	42.8			

● (최고세율 변화) 2010년 vs. 2019년

- 세율 인상 23개국
- 세율 인하 9개국, 세율 유지 4개국
- ▶ 세율 인상 23개국: 리투아니아, 오스트리아, 그리스, 슬로베니아 등



▶ 세율 인하 9개국: 헝가리, 영국 등 / 유지 4개국: 독일 등



주: 지방세 포함 최고세율 기준 자료: OECD Tax Database

20 국제비교: 소득세 부담

- 2018년 기준 명목 GDP 대비 소득세 부담 5.2%
 - 2018년 OECD 평균 8.3%
 - 우리나라는 2011년 3.5%에서 2018년 5.2%로 상승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캐나다	11.1	11.4	11.3	11.4	12.1	11.9	11.7	12.0
이탈리아	11.0	11.6	11.6	11.2	11.2	10.9	10.8	10.8
미국	9.3	9.2	9.9	10.1	10.6	10.4	10.4	9.9
독일	8.8	9.4	9.6	9.6	9.8	9.9	10.2	10.4
영국	9.3	8.9	8.9	8.7	8.9	9.0	9.1	9.1
프랑스	7.4	8.0	8.4	8.5	8.5	8.6	8.6	9.5
일본	5.1	5.2	5.5	5.7	5.8	5.7	5.9	6.0
한국	3.5	3.7	3.7	4.0	4.3	4.6	4.8	5.2
OECD평균	7.7	7.9	8.0	8.2	8.3	8.2	8.3	8.3

주: 1) 2018년 호주, 그리스의 미발표로 이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OECD Tax Database(2020.7.31, 기준)

²⁾ 한국은 GDP 기준년 변경(2010년 → 2015년)을 반영한 수치이며, 이를 기준으로 OECD 평균 도출

21 소득세 최근 개정 동향

● 소득세율 인하 후 최고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인상

(단위: %)

2008년		2009년 2010		2010년		
4단계		4단계 4단		4단계	단계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이하	1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이하	25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5	8,800만원 초과	35	8,800만원 초과	35	

2012년		2014년	
5단계	5단계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이하	24
3억원 이하	35	1.5억원 이하	35
3억원 초과	38	1.5억원 초과	38

이러면 소피	30	1.0극전 소파	30	
2017년		2018년		
6단계		7단계		
과표구간	과표구간 세율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이하	24	
1.5억원 이하	35	1.5억원 이하	35	
5억원 이하	38	3억원 이하	38	
5억원 초과	40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2	

주: 파란색은 세율 인하, 빨간색은 세율 인상 부분임

● 금융소득 과세강화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13년)

	1996~2001	2002~2012	2013~
과세단위	부부합산	개인단위	개인단위
기준금액	4,000만원	4,000만원	2,000만원

주: 1998~2000년 귀속 소득분은 외환위기 여파 등을 고려하여 과세 유보

• 주식 양도차익 대주주 과세요건 완화

(지분율, 시가총액)

시행	코스피		코스닥		코	.넥스	비싱	장주식
1999.1.	5%		5%					
2000.1.	3%	100억원	3%	100억원				
2005.8.	(동일)	5%	50억원				
2013.7.	2%	50억원	4%	40억원	4%	10억원		
2016.4.	1%	25억원	2%	20억원	(5	동일)	(코스	피 동일)
2017.1.	(동일)	(동일)	(5	동일)	4%	25억원
2018.4.	1%	15억원	2%	15억원	(동일)		4%	15억원
2020.4.	1%	10억원	2%	10억원	(동일)		4%	10억원
2021.4	1%	3억원	2%	3억원	4%	3억원	4%	3억원

• 중소기업 대주주 세율 인상

중소기업대주주	~2015	2016~2019	2020~
세율	10%	20%	3억 이상 20% 3억 초과 25%

• 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 20% 적용 ('16. 1.1. 이후, 75%내 탄력운용)

● 근로장려세제 확대

		2018년(개정 전)	2019년 이후(현행)	
연령	요건	단독가구 30세 이상	연령기준 폐지	
재산	요건	가구당 1.4억원 미만 * 재산 1억원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가구당 2억원 미만 *재산 1.4억원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단독	1,300만원 미만	2,000만원 미만	
소득 요건	홑벌이	2,100만원 미만	3,000만원 미만	
	맞벌이	2,500만원 미만	3,600만원 미만	
	단독	85만원	150만원	
최대 지급액	홑벌이	200만원	260만원	
	맞벌이	250만원	300만원	
지급방식		다음연도 연 1회 지급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 (근로소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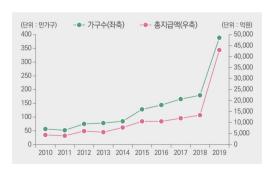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지급연도 기준)

연 도	가 구 수 (만가구)	가구당금액 (만원)	총 지급액 (억원)
2010	57	77	4,369
2011	52	77	4,020
2012	75	82	6,140
2013	78	72	5,618
2014	85	92	7,745
2015	128	82	10,566
2015	[107]	[61]	[6,579]
2016	144	73	10,574
2010	[94]	[60]	[5,700]
2017	166	72	11,967
2017	[106]	[53]	[5,637]
2018	179	75	13,381
2016	[94]	[52]	[4,917]
2019	389	111	43,003 ¹⁾
2019	[85]	[86]	[7,273]

주: []는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임

1) 지급시기 조정효과 반영시 4.8조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택임대소득세 과세 개편

- 주택 임대소득 연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연 2천만원 이하는 2018년까지 비과세였으나 2019년부터 분리과세(14%)*가 시행됨
- *분리과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과세하는 종합과세와 달리,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 세율에 의해 과세하는 방식

〈주택 임대소득 과세제도, 2020년 기준〉

:	구분	월세	전세
	1주택 보유자	비과세 (단,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및 국외주택 과세)	비과세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2주택 보유자	선택적 분리과세	
이하	3주택 이상 보유자	선택적 분리과세	보증금합계 3억원 이하: 비과세 보증금합계 3억원 이상: 선택적 분리과세
임대소득 2천만원 초과	1주택 보유자	비과세 (단,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및 국외주택 과세)	비과세
	2주택 보유자		
	3주택 이상 보유자	종합과세	보증금합계 3억원 이하: 비과세 보증금합계 3억원 이상: 종합과세

주: 1. 국외 소재 주택은 주택가액과 무관하게 월세에 대해 소득세 과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전세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총수입금액 합산은 3주택 이상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 3억원 초과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소형주택(전용면적 40㎡ &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2021.12.31.까지 주택 수에 미포함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개편

-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총급여 25% 초과 금액의 15~40%를 최대 300만원 한도로 공제
- 코로나 19 지원대책으로 2020년 3~7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확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개요(2020년 6월 기준)〉

		기간별 공제제도			
제도	항목	3월	4-7월	1~2월, 8월 이후	
	• 신용카드	30%	80%	15%	
소득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60%	80%	30%	
공제율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60%	80%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80%	80%	4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min(300	만원, 총급	글여20%)	
	• 총급여 7천만원~1.2억원	250만원			
소득공제	• 총급여 1.2억원 초과	200만원			
한도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각 100만	<u>l</u> 원 추가		
	사용분				

일몰 기한 2022.12.3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연금계좌세액공제 확대

-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50세 이상 종합소득자의 연금계좌 납입한도 확대(2020.1~2022.12)
 - 연금저축: 400만원 → 600만원
 - 연금저축+퇴직연금: 700만원 → 900만원
- ISA계좌 만기 후 연금계좌로의 추가 납입 허용 및 세액공제 한도 확대(2020.1~)
 - 추가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

● 근로소득공제한도 신설

• 공제한도 2천만원 설정(2020.1~)

Part 2

국 세 법인세

22 법인세 과세체계

 각 시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등을 처감한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곱한 후, 세액공제·감면을 처감



토지 등 양도소득

양도소득 × (법인세율 + 추가세율*)
* 지가급등지역 10%, 주택·비사업용 토지 10%(미등기 40%)

23 법인세 과세대상

납세	내국 법인	• 국내에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				
의무자	외국 법인	•외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				
714	내국 법인	• 국내외 모든 소득(worldwide income) ※ 거주지국 과세원칙(residence principle) ※ 외국납부 법인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				
과세 대상	외국 법인	• 국내에서 발생하는 원천소득에 한함 ※ 원천자국 과세원칙(source principle) ※ 과세소득: 이자·배당·부동산·사업소득 등 10가지 (「법인세법」제93조)				
과세 소득	• 각 사업연도소득 = 결산상 당기순이익 ± 세무조정 ※ 세무조정: "익금산입/손금불산입'의 가산조정					
과세 표준	• 각 사업연도소득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국제비교〉	
글로벌 과세체계	•국내소득과 해외소득 모두 과세 대상 포함 후 외국납부세액공제 •체코, 한국, 멕시코, 칠레, 이스라엘 등
영토주의 과세체계	•국내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미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24 법인세 최저한세

●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AMT)

- 1991년 시행, 각종 조세감면에 대해 총량 한도를 설정 함으로써 최소한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규정
- 최저한세에 적용되는 세율은 비과세·감면·공제 등 세감면을 감안하여 당해연도에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 수준
 - ※ 단,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연도 공제 받지 못한 세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로 이월공제 가능

[해외사례]

- 대만(12%), 멕시코(16.5%) 등 이외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등 운영
 - ※ 일본은 최저한세 제도 대신, 감면제도별로 산출세액의 10~20% 수준에서 세액공제·감면의 한도 설정
- 일부 세액공제·감면 항목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 이를 감안 시 면세기업 발생 가능

(단위: 억원)

최저한세 적용제외 주요 항목	중소기업	일반법인
외국납부세액공제	911	27,084
R&D비용 세액공제	12,181	30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61	-
수도권밖 이전 공장·본사 세액감면	230	7,367
영농·영어조합법인 세액감면	220	8
외국인투자 법인세 세액감면 등	55	1,630

주: 2018년 신고기준

자료: 국세청. 「2019 국세통계연보」

25 법인세율, 최저한세율

● (법인세율) 2008~2010년 인하된 후 2011년 중간 과표구간 신설. 2018년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인상(4단계 누진세율 구조)

/FFOI: 0/ \

						(단위: %)
과세표준 구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8~ (현행)
1억원	13%	13%	11%	10%	10%	10%
1~ 2억원	25%	1170				
2~200억원		25%			20%	20%
200~3,000억원					22%	22%
3,000억원 초과						25%

주: 음영부분은 세율 변경이 이루어진 시기를 표시

● (최저한세율) 법인세율 인하에 맞추어 2008~2010년 인하. 2013~2014년 대기업 중심 세율 인상

※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세감면을 감안하여, 당해연도에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 수준

(단위: %)

과세표준 구간	2007	2008	2009	2010	2013	2014~ (현행)
100억원	13%	13%	11%	10%	10%	10%
100~1,000억원				11%	12%	12%
1,000억원 초과	15%	15%	14%	14%	16%	17%
중소기업	10% 8%		%	7%		

주: 음영부분은 세율 변경이 이루어진 시기를 표시

26 법인세수 현황

● 법인세는 2019년 72.2조원, 국세대비 24.6%

(단위: 조원, %)

연도	국세(A)	법인세(B)	비중(B/A)
2010	177.7	37.3	(21.0)
2011	192.4	44.9	(23.3)
2012	203.0	45.9	(22.6)
2013	201.9	43.9	(21.7)
2014	205.5	42.7	(20.8)
2015	217.9	45.0	(20.7)
2016	242.6	52.1	(21.5)
2017	265.4	59.2	(22.3)
2018	293.6	70.9	(24.2)
2019	293.5	72.2	(24.6)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7 신고법인수 추이

- 신고법인수: 1990년 6.3만개 → 2019년 78.7만개
- 2019년 일반기업 8.3만개. 중소기업 70.4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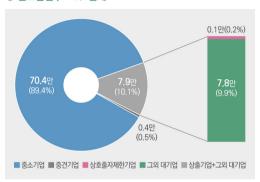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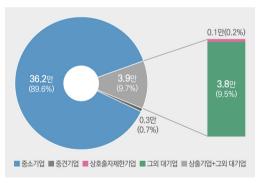
주: 2019년 신고기준

28 법인세 과세 현황

● 신고법인수 78.7만개



● 세부담 기업수 40.4만개



주: 2019년 신고기준

● 기업규모별



● 과표구간별



주: 2019년 신고기준

29 법인세 신고 현황: 기업규모별

(단위: 만개, 조원, %, %p)

					(11)	C/11, ± 2,	70, 70P)
구분		전체	일반기업				중소
				중견	상출	기타	기업
신고	법인수	78.7	8.3	0.4	0.1	7.8	70.4
흑자	법인수	49.8	5.5	0.3	0.1	5.1	44.3
(Н	(중)	(63.2)	(65.5)	(68.3)	(66.0)	(65.3)	(63.0)
당기	순이익	319.2	228.0	20.5	103.5	104.0	91.2
각사업	연도소득	383.6	273.4	25.3	138.2	109.9	110.3
비	막세*	4,716.7	3,727.6	46.4	228.7	3,452.4	989.1
소득	공제	6.2	4.9	0.1	0.03	4.7	1.4
과서	과세표준		255.7	23.6	133.6	98.5	96.5
산출	산출세액		58.2	4.8	32.2	21.2	16.1
공제	(금액)	8.3	5.0	0.6	3.0	1.3	3.4
•	(비중)	(100.0)	(59.6)	(7.3)	(36.6)	(15.7)	(40.4)
감면	법인당*	0.3	6.7	3.4	62.7	2.5	0.1
	(금액)	67.2	54.3	4.4	29.5	20.4	12.9
총부담 세액	(비중)	(100.0)	(80.8)	(6.5)	(43.9)	(30.4)	(19.2)
	법인당*	1.7	12.9	14.7	335.4	5.3	0.4
명목시	명목세율(A)		22.8	20.4	24.1	21.5	16.7
실효시	il율(B)	19.1	21.2	18.5	22.1	20.7	13.4
세율감	소(A-B)	2.0	1.5	1.9	2.0	0.7	3.3

주: 1) 2019년 신고기준(2018년 귀속)값으로 *의 단위는 억원임

명목세율(%)=(산출세액/과세표준)×100, 실효세율(%)=(총부담세액/과세표준)×100

30 법인세 신고 현황: 과표구간별

(단위: 만개, 조원, %, %p)

구분		전체	2억원 이하	200억원 이하	1천억원 이하	5천억원 이하	5천억원 초과
신고	법인수	78.7	69.0	9.6	0.1	0.024	0.006
흑자	법인수	49.8	40.2	9.5	0.1	0.023	0.006
(出	(중)	(63.2)	(58.3)	(98.4)	(96.7)	(97.5)	(93.4)
당기	순이익	319.2	47.6	92.2	39.1	40.5	99.8
각사업	연도소득	383.6	33.1	112.5	50.3	49.5	138.3
비	斗세*	4,716.7	3,306.2	1,180.8	154.9	62.4	12.4
소득	공제	6.2	4.5	1.7	-	-	-
과서	과세표준		17.0	103.3	47.7	48.4	135.8
산출	세액	74.3	1.7	18.4	10.0	10.7	33.4
공제	전체	8.3	0.3	3.3	0.8	0.8	3.1
	(비중)	(100.0)	(4.1)	(39.2)	(9.8)	(10.2)	(36.7)
감면	법인당*	0.3	0.02	0.5	10.5	43.0	535.9
	전체	67.2	1.5	15.4	9.5	10.1	30.7
총부담 세액	(비중)	(100.0)	(2.3)	(23.0)	(14.1)	(15.1)	(45.6)
.117	법인당*	1.7	0.05	1.7	84.8	431.3	5,024.8
명목시	명목세율(A)		10.1	17.8	21.1	22.1	24.6
실효시	il율(B)	19.1	8.9	15.0	19.9	20.9	22.6
세율감	소(A-B)	2.0	1.1	2.9	1.2	1.1	2.0

주: 1) 2019년 신고기준(2018년 귀속)값으로 *의 단위는 억원임

²⁾ 명목세율(%)=(산출세액/과세표준)×100. 실효세율(%)=(총부담세액/과세표준)×100

31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단위: %, %p)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16.0	16.1	16.6	17.2	17.6	19.1
1억원 이하	8.8	8.7	8.8	9.8	9.8	8.6
2억원 이하	8.4	8.3	8.3	8.4	8.3	8.1
5억원 이하	10.7	10.6	10.6	10.7	10.6	10.3
10억원 이하	13.1	13.1	13.4	13.4	13.3	12.8
20억원 이하	14.6	14.8	14.9	15.0	14.9	14.6
50억원 이하	15.5	15.8	160	16.3	16.3	16.1
100억원 이하	16.6	16.5	17.1	17.2	17.3	17.1
200억원 이하	16.7	17.3	17.4	17.8	18.0	17.9
500억원 이하	17.7	18.0	18.5	19.0	19.5	19.2
1천억원 이하	18.9	18.8	19.5	19.5	20.3	20.6
3천억원 이하	-	-	-	-	-	20.4
5천억원 이하	18.4	18.7	19.5	20.5	20.6	22.0
5천억원 초과	16.4	16.4	17.2	18.0	18.5	22.6

주: 1) 법인세 신고기준

2) 실효세율(%)=(총부담세액/과세표준)×100. 외국납부세액 제외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세율: 2019년 명목최고세율 25.0%, 실효세율 19.1%



주: 1) 법인세 신고기준

2) 실효세율(%)=(총부담세액/과세표준)×100, 지방소득세 및 외국납부세액 제외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평균 실효세율 비교

	(1) 외국납부세액 제외		(<i>;</i> 외국납 포		(3) 외국납부세액 지방세 포함	
	수입금액 기준	과세표준 기준	수입금액 기준	과세표준 기준	수입금액 기준	과세표준 기준
2018년	16.0	17.6	16.7	18.4	18.3	20.1
2017년	15.6	17.2	16.3	18.1	17.9	19.9
2016년	14.4	16.6	15.4	17.8	16.8	19.5
2015년	14.5	16.1	15.6	17.3	17.4	19.3
2014년	14.2	16.0	15.3	17.2	16.7	18.8

주: 법인세 신고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2 법인세 세액공제·세액감면

● 법인세 감면액(외국납부세액공제 제외): 8.2조원('18년)



- 주: 1. 감면액 비중= 총 국세 감면액 대비 법인세 감면액 비중
 - 2.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제외된 금액
 - 3. 2019년과 2020년은 전망치

자료: 대한민국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기업규모별 공제감면 점유비 추이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3 국제비교: 법인세 과표구간수

과표 구간수		해당 국가
1개	32개국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²⁾ , 캐나다 ³⁾ ,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⁴⁾ , 라트비아,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⁵⁾ ,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2개	1개국	네덜란드 ⁶⁾ , 프랑스 ⁷⁾
3개	1개국	룩셈부르크 ⁸⁾
4개	1개국	한국

- 주: 특정소득(체코, 슬로베니아 등), 특정산업(이스라엘, 영국), 특정도시(룩셈부 르크), 손실기업(이탈리아), 소규모 법인(호주, 일본) 등에 대한 차등세율은 단일 세율로 분류하며, 지방세(Local tax)나 법인세에 부가되는(sur-tax)를 제외한 중앙정부 법인세 기준의 과세표준 구간수임(2020년 기준)
 - 1) 호주: 기본세율 30%, 2500만 AUD 미만 소기업 26.0%
 - 2) 벨기에: 기본세율 29%에 추가 과세하는 crisis tax 2% 포함시 29.58%
 - 3) 캐나다: 연방법인세율은 38%이나 연방법인세 공제・감면 등을 감안한 순 법인세율은 15%, 50만 CAD 이하 소기업의 경우 공제감면으로 인해 9% 세율이 적용
 - 4) 일본: 기본세율은 23.4%, 과세소득 800만엔 이하 소기업 15%
 - 5) 포르투갈: 기본세율 21%에 부가세(sur-tax)로 과세소득 150만유로 /750만유로/3,500만유로 기준, 0%/3%p/5%p/9%p씩 추가 과세
 - 6) 네덜란드: 20만 유로 미만 20%, 20만 유로 이상 25%
 - 7) 프랑스: 매출 2억 5000만 유로 미만 28%, 2억 5000만 유로 이상 31%, 납부세액 763만 유로이상인 경우 3.3% 할증되어 32.02%
 - 8) 룩셈부르크: 17.5만 유로/17.5~20만 유로/20만 유로 이상 15~17%이며. 20만 유로 이상의 경우 고용기금납입료 포함 18.19%에 지방세 적용으로 24.94% 세율이 적용

자료: OECD Tax Database(2020.7.31, 기준) 및 각 국가의 과세관청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4 국제비교: 법인세 최고세율

● 중앙정부 기준: 2020년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 25%는 OECD 국가 중 6위 수준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프랑스	36.1	36.1	38.0	38.0	38.0
한국	22.0	22.0	22.0	22.0	22.0
이탈리아	27.5	27.5	27.5	27.5	27.5
일본	30.0	30.0	28.1	28.1	23.9
미국	35.0	35.0	35.0	35.0	35.0
영국	26.0	24.0	23.0	21.0	20.0
독일	15.8	15.8	15.8	15.8	15.8
캐나다	16.5	15.0	15.0	15.0	15.0
G7 평균	26.7	26.2	26.1	25.8	25.0
OECD 평균	23.2	23.1	23.3	23.1	22.9

주: ()는 OECD 36개국 중 순위로, 2020년 기준값

자료: OECD Tax Database(2020.7.31. 기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 22.0%('11) → 25.0%('20)

• G7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 26.7%('11) → 21.4%('20)

• 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 23.2%('11) → 21.5%('20)

(단위: %)

					(E11: 70)
2016	2017	2018	2019	20	20
34.4	44.4	34.4	32.0	32.0	(1)
22.0	22.0	25.0	25.0	25.0	(6)
27.5	24.0	24.0	24.0	24.0	(12)
23.4	23.4	23.2	23.2	23.2	(14)
35.0	35.0	21.0	21.0	21.0	(20)
20.0	19.0	19.0	19.0	19.0	(26)
15.8	15.8	15.8	15.8	15.8	(31)
15.0	15.0	15.0	15.0	15.0	(32)
24.5	25.2	21.8	21.4	21.4	
22.6	22.4	21.9	21.7	21.5	

● 지방세²⁾포함기준: 2020년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 27.5%는 OECD 국가 중 9위 수준

• 2020년 G7 평균 법인세최고세율(지방세포함)은 27.2% OECD 평균 법인세최고세율(지방세포함)은 23.1%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프랑스	36.1	36.1	38.0	38.0	38.0
독일	29.6	29.6	29.6	29.7	29.8
일본	39.5	39.5	37.0	37.0	32.1
이탈리아	31.4	31.3	31.3	31.3	31.3
한국	24.2	24.2	24.2	24.2	24.2
캐나다	27.7	26.1	26.2	26.2	26.7
미국	39.2	39.1	39.0	39.1	39.0
영국	26.0	24.0	23.0	21.0	20.0
G7 평균	32.8	32.2	32.0	31.8	31.0
OECD평균	25.1	25.0	25.1	24.9	24.7

주: ()는 OECD 36개국 중 순위로, 2020년 기준값 자료: OECD Tax Database(2020.7.31, 기준) 자료를 토대로 국회에산정책처 작성

²⁾ 지방정부에서 자체재원으로 운영하는 지방세와 법인세에 부과되는 부가세(surtax)가 포함되었으며, 미국과 캐나다 등의 지방세율은 주별 지방세율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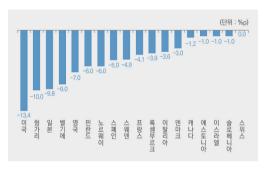
-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포함): 24.2%('11) → 27.5%('20)
- G7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포함): 32.8%('11) → 27.2%('20)
- 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포함):25.1%('11) → 23.1%('2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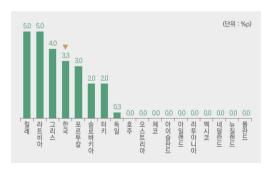
2016	2017	2018	2019	2020	순위		
2010	2017	2016	2019	2020	'11	'19	변동
34.4	44.4	34.4	32.0	32.0	(3)	(1)	2 †
29.8	29.9	29.9	29.9	29.9	(9)	(5)	4 †
30.0	30.0	29.7	29.7	29.7	(1)	(6)	5↓
31.3	27.8	27.8	27.8	27.8	(5)	(8)	3↓
24.2	24.2	27.5	27.5	27.5	(21)	(9)	12 †
26.7	26.7	26.8	26.8	26.5	(14)	(10)	4 †
38.9	38.9	25.8	25.9	25.8	(2)	(11)	9↓
20.0	19.0	19.0	19.0	19.0	(16)	(30)	14↓
30.2	31.0	27.6	27.3	27.2			
24.4	24.2	23.7	23.5	23.1			

● (최고세율 변화, 지방세 등 포함) 2011년 vs. 2020년

- 세율 인하 18개국
- 세율 인상 8개국, 세율 유지 10개국
- ▶ 세율 인하 18개국: 미국, 헝가리, 일본, 벨기에, 영국 등



▶ 세율 인상 8개국: 칠레, 그리스, 한국 등 ; 유지 10개국: 호주, 체코 등



주: 지방세 등을 포함한 최고세율 기준 자료: OECD Tax Database(2020.7.31. 기준)

35 국제비교: 법인세 부담

● 2018년 기준 명목GDP 대비 법인세 부담 4.2%

• 2018년 OECD 평균 3.0%

(단위: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한국	3.5	3.2	3.0	3.1	3.4	3.6	4.2
일본	3.5	3.8	3.9	3.8	3.7	3.7	4.1
캐나다	3.2	3.3	3.3	3.4	3.7	3.7	3.7
영국	2.7	2.6	2.5	2.4	2.7	2.8	2.9
프랑스	2.6	2.6	2.3	2.1	2.0	2.3	2.1
독일	1.7	1.8	1.7	1.7	2.0	2.0	2.1
이탈리아	2.4	2.6	2.2	2.0	2.1	2.1	1.9
미국	2.0	2.1	2.3	2.1	2.0	1.7	1.1
OECD평균	2.8	2.8	2.7	2.8	2.9	3.0	3.0

주: 우리나라는 SNA 2015년 기준 경상 GDP 성장률을 적용하여 산출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2020.7.31. 기준)

36 법인세 최근 개정 동향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지원수준 확대

• 일몰연장: 2019년말 → 2021년말 2년 연장

• 공제율 상향

개정전			개정후		
대	중견	중소	대	중견	중소
1	3	7	2*	5	10

* 2020년 1년 한시적용

● 혁신성장 및 투자촉진 세제지원 강화

- 영상콘텐츠제작 공제대상 비용 범위 확대 (현행+다큐멘터리 전체 및 오락 추가)
- 초연결 네트워크 설비투자 공제대상 비용 범위 확대(현행+공사비 추가)
- 내국법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출자·인수 과세특례 신설: 공제율 5%~최대 10%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 · 대기업: ('18년 귀속) 70% → ('19년 귀속) 60%
- 연결법인 및 외국법인: ('18년 귀속) 80% → ('19년 귀속) 60%

●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상향

- 중소기업: (현행) 2,400만원 → (개정후) 3,600만원
- 적용률: 100억원 이하 0.2% → 0.3%. 500억원 이하 0.1% → 0.2%

● 법인세 비과세·감면 축소 정비 지속

- 법인세 감면액 비중
 - ('11) 31.1% \rightarrow ('18) 18.7% \rightarrow ('20°) 15.1%

※ 2020년 전망치

● 법인세율은 2018년부터 2007년 수준으로 환원

	2007	2009	2013	2014	2018~
법인세율	25%	22% (-3%p)	22%	22%	25% (+3%p)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개정전	개정후
•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 대상: 6개월 이상 육이휴직 복귀자 - 공제율: 중견 5%, 중소 10% - 적용기한: 2020년	기업요건 완화

Part 2

국 세 부가가치세

37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 재화 및 용역의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
 - 전단계세액공제법: 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며, 세율은 10% 단일세율
 - 단. 수출재화 등 영세율 적용. 기초생활필수품 등 면제

매출세액 (A)	과세표준 × 세율 + 예정신고누락분 ± 대손세액 가감
매입세액 (B)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입세액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매입세액
최종 납부세액 (A-B)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환급) 세액 - 공제, 감면세액 -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 가산세액 = 차가감 납부(환급) 세액

● 납세의무자: 사업자, 재화 수입업자

사업자	세부 구분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용역 공급업자 (수입금액에 따라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구분)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재화·용역 공급업자
수입자	국외거주자가 공급하는 재화의 수입자 (세관장이 수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징수)

구분		과세 내용
일반	기준	전년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개인·법인 사업자
과세자 세액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공제세액
7101	기준	전년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과세자	세액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세율×10%) - 공제세액 ※공급대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38 영세율, 면세

- 영세율: 재화·용역 공급시 영의 세율(0%) 적용
- 면세: 재화·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면세

구	분	영세율	면세	
납세의무 있음		있음	없음	
적용목적		소비지국 과세원칙, 수출촉진	부가가치 구성요소,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기초생필품 등), 조세정책상의 목적	
사업자의 협력의무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상의 협력의무 이행	납세의무자 아님,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협력의무가 없음	
거래	매출	면세 : 영의 세율로 매입자 거래징수 하지 않음	면세 : 과세대상거래 아님	
징수	매입	과세 : 환급 또는 매출세액공제	과세 : 필요경비 또는 고정자산 취득가액에 기산	
특징		완전면세	부분면세	

● 면세 대상

부가가치세법			
기초 생활 필수품	• 미가공식료품 • 국산 비식용 농·축·수·임산물 • 수돗물 • 연탄과 무연탄 •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 대중여객운송용역(일반고속버스 포함) •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국민 후생	• 의료보건용역(치료 이외의 미용·성형 등 제외)과 혈액 • 교육용역		
문화	•도서·신문·잡지·방송 등(광고 제외) •예술창작·예술행사·문화행사·아마추어 운동경기 •도서관·과학관·박물관·동물원·식물원에의 입장		
생산 요소	• 토지 • 금융·보험 용역(보호예수 등 일부 부수용역 제외) • 인적용역		
기타	 우표, 인지, 복권 일정한 금액 이하의 담배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의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조세특례제한법		
	그미프데 미 케다 프데이 기사이어		

- 국민주택 및 해당 주택의 건설용역
- 시내버스 운송사업용 천연가스 버스
-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 농·임·어업용 및 연안선박용 석유류 등

39 부가가치세 현황 및 통계

● 부가가치세는 2019년 70.8조원, 국세 대비 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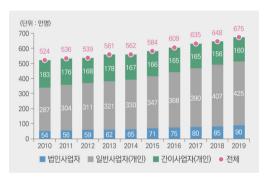
(단위: 조원, %)

연도	국세(A)	부가가치세(B)	비중(B/A)
2009	164.5	47.0	(28.6)
2010	177.7	49.1	(27.6)
2011	192.4	51.9	(27.0)
2012	203.0	55.7	(27.4)
2013	201.9	56.0	(27.7)
2014	205.5	57.1	(27.8)
2015	217.9	54.2	(24.9)
2016	242.6	61.8	(25.5)
2017	265.4	67.1	(25.3)
2018	293.6	70.0	(23.8)
2019	293.5	70.8	(24.1)



● 부가가치세 신고 건수는 2010년 524만건에서 2019년 675만건으로 증가

- 사업자 유형별 인원:
 (10) 법인 54만건 / 일반 287만건 / 간이 183만건
 (19) 법인 90만건 / 일반 425만건 / 간이 160만건
- 개인사업자 중 간이사업자 비중은 2010년 38.9%에서 2019년 27.4%로 감소
 - ※ 간이사업자 비중=간이사업자/(일반사업자+간이사업자)





40 국제비교: 부가가치세율

● 2019년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 10%는 OECD 회원국³⁾ 중 32위 수준

- 2019년 OECD 평균 부가가치세율 19.3%
- 주요국 중 이탈리아·프랑스·영국 20%대, 우리나라·독일·일본 10%대, 캐나다 5% 수준

(단위: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이탈리아	20.0	20.0	21.0	21.0	22.0	22.0
프랑스	19.6	19.6	19.6	19.6	20.0	20.0
영국	17.5	20.0	20.0	20.0	20.0	20.0
독일	19.0	19.0	19.0	19.0	19.0	19.0
한국	10.0	10.0	10.0	10.0	10.0	10.0
일본	5.0	5.0	5.0	5.0	5.0	8.0
캐나다	5.0	5.0	5.0	5.0	5.0	5.0
미국	-	-	-	-	-	-
주요국 평균	13.7	14.1	14.2	14.2	14.4	14.9
OECD평균	18.2	18.7	18.9	19.1	19.2	19.3

주: ()는 OECD 34개국 중 순위

자료: OECD Tax Database(2020.7.31. 기준)를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³⁾ 미국은 연방정부의 부가가치세 없이, 주정부에서 판매세(sales tax)를 운영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 ('10)10.0% → ('19)10.0%

• OECD 평균 부가가치세율: ('10)18.2% → ('19)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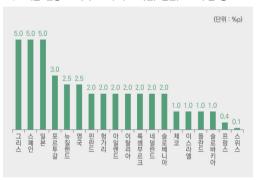
주요국 평균 부가가치세율: ('10)13.7% → ('19)14.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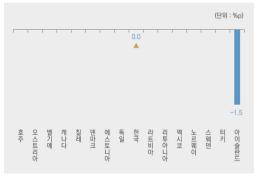
2016	2017	2018	2019	순위			
2010	2017	2016	2019	'10	'19	변동	
22.0	22.0	22.0	22.0	(15)	(11)	4†	
20.0	20.0	20.0	20.0	(18)	(21)	3↓	
20.0	20.0	20.0	20.0	(25)	(23)	2 †	
19.0	19.0	19.0	19.0	(20)	(25)	5↓	
10.0	10.0	10.0	10.0	(32)	(32)	-	
8.0	8.0	8.0	10.0	(35)	(33)	2 †	
5.0	5.0	5.0	5.0	(34)	(35)	1↓	
_	-	_	_	_	_	-	
14.9	14.9	14.9	14.9				
19.3	19.3	19.3	19.3				

● (세율 변화) 2010년 vs. 2019년

- 세율 인상 19개국
- 세율 유지 15개국 및 세율 인하 1개국
- ▶ 세율 인상 19개국: 그리스, 스페인, 일본, 포르투갈 등



▶ 세율 유지 15개국: 호주, 한국 등 ; 세율 인하 1개국: 아이슬란드



자료: OECD Tax Database(2020.7.31. 기준)

41 국제비교: 경감세율

● OECD 국가 현황

국가	표준/단일세율	경감세율	특정지역 세율
오스트리아	20.0	10.0/13.0	19.00
벨기에	21.0	0.0/6.0/12.0	-
캐나다	5.0	0.0	13.0/14.0/15.0
체코	21.0	10.0/15.0	-
덴마크	25.0	0.0	-
핀란드	24.0	0.0/10.0/14.0	-
프랑스	20.0	2.1/5.5/10.0	0.9/2.1/10.0/13.0 & 1.05/1.75/2.1/8.5
독일	19.0	7.0	-
그리스	23.0	6.0/13.0	4.0/9.0/17.0
헝가리	27.0	5.0/18.0	-
아이슬란드	24.0	0.0/11.0	-
아일랜드	23.0	0.0/4.8/9.0/13.5	-
이탈리아	22.0	4.0/5.0/10.0	-
일본	10.0	8.0	-
한국	10.0	-	-
영국	20.0	0.0/5.0	-

자료: OECD Tax Database(2020.7.31. 기준)

42 국제비교: 소규모사업자 과세특례

 세법지식·계산능력·장부 기장능력·신고서 작성능력 등의 부족을 감안하여 도입 운영

국가	내용
영국	• (간편납세제도) 다음 연도 연간 과세대상 매출 예상액 15만파운드 (세제외) 이하 또는 총사업수입(예상액) 187,500파운드 이하 (세포함) 사업자에 대해 총매출액(세포함)에 55개 업종별 세율을 곱하여 세액 산출
독일	•(표준율제도) 전년도 매출액이 61,356유로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 52개 업종별 표준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
일본	• (간이과세제도) 기준기간(과세기간 2년 전)에 과세매출액 5,000만엔 이하 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제도 선택 가능
한국	• (간이과세제도) 전년도 매출액(세포함) 4,800만원 이하 사업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3 국제비교: 부가가치세 부담

● 2018년 기준 명목GDP 대비 부가가치세부담 4.3%

• OECD 평균 7.1%

(단위: %)

					(E11: 70)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독일	6.9	7.0	6.9	6.9	7.0
프랑스	6.9	6.9	6.9	7.0	7.2
영국	6.7	6.8	6.8	6.9	7.0
캐나다	4.1	4.5	4.5	4.5	4.5
한국	4.2	3.8	4.2	4.3	4.3
일본	3.7	4.2	4.1	4.1	4.1
미국	_	_	_	_	-
OECD 평균	6.7	6.7	6.8	6.8	6.9 ¹⁾

주: 1) 호주, 그리스는 2018년 자료가 발표되지 않아, 2017년 자료를 적용하여 OECD평균 산출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2020.7.31. 기준) 자료를 토대로 국회에사정책처 작성

44 부가가치세 최근 개정 동향

● 부가가치세 면세의 과세전환 및 면세 신설

	내용
과세 전환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 등 일정한 수익사업('07년) •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 및 애완동물 진료용역 등('10년) • 치료 이외의 미용 성형 등의 의료용역('13년) • 대형 공동주택 관리 및 경비와 청소용역('14년) • 은행업 중 보호예수, 보험업 중 모험계리용역('14년) • 안면윤곽술 등 미용성형수술('14년)
영세율 신설 등	• 시각장애인용 화면해설 방송수신기('11년)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확대('05년) 연장('19년)
면세 신설	•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바우처 방식 복지서비스('08년) •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관련 설계 용역('08년) • 노인복지주택 공급 일반 관리·경비용역 및 청소용역('10년) • 목재펠릿('10년) • 산후조리원 용역, 기초수급자 사육동물 진료영역('11년) • 친환경 전기버스('11년) • 사회적기업의 간병, 산후조리, 보육 및 교육용역('12년) • 일반 고속버스('14년) • 연극 및 무용, 온실가스 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15년) • 액상형 분유, 어작업 대행용역 면제 확대('16년) • 수소버스 부가가치세 면제('19년)

자료: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각 연도

●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정비

*면세재화 매입시 세금계산서 없이도 일정 금액을 의제하여 공제

	의 배납시 제답제단시 없이고 걸음 답극길 크레이의 용제
개정연도	면세농산물 등
'05. 3	일반 업종: 2/102 음식업 (원칙) 3/103 (특례) '06년말까지 면세농산물 5/105
'07. 4	일반업종 2/102 음식업 (원칙) 3/103 (특례) '08년말까지 면세농산물 6/106
'10. 3	일반업종 2/102 음식업 (원칙) 3/103, 과세유흥장소 4/104 (특례) 10년말까지 농산물 법인 6/106, 개인 8/108
'12. 2	일반업종 2/102 음식업 법인 6/106, 개인 8/108, 과세유흥장소 4/104
'13. 2	일반업종 2/102 음식업 법인 6/106, 개인 8/108, 과세유흥장소·제조업 중소기업 및 개인 4/104
'17. 12	일반업종 2/102 음식업 법인 6/106, 개인 9/109(~'19.12.31) 과세유흥장소·제조업 중소기업 및 개인 4/104
'18. 12	일반업종 2/102 음식업 법인 6/106, 개인 9/109(~'19.12.31) 과세유흥장소 4/104 제조업 중소기업·개인 4/104, 과자점업·도정업 등 6/106
'19. 12	일반업종, 과세유흥장소 2/102 음식압 법인 6/106, 개인 9/109(~'21.12.31) 제조업 중소기업·개인 4/104, 과자점업·도정업 등 6/106
개정연도	재활용폐자원
'06. 12	6/106 중고품 10/110
'10. 1	106분의 6 중고자동차: '10. 1. 1. ~ '10. 12. 31. 10/110 '11. 1. 1. ~ '13. 12. 31. 9/109
'14. 1	재활용품: '14. 1. 1. ~ '15. 12. 31. 5/105 '16. 1. 1. ~ '16. 12. 31. 3/103 중고자동차: '14. 1. 1. ~ '14. 12. 31. 9/109
'14. 12	중고자동차: '16. 12. 31. 9/109
'13. 2	재활용품: '17. 1. 1. ~ '18. 12. 31. 3/103 중고자동차: '17. 1. 1. ~ '18. 12. 31. 9/109
'17. 12	재활용품: '17. 1. 1. ~ '18. 12. 31. 3/103 중고자동차: '18. 1. 1. ~ '18. 12. 31. 10/110
'18. 12	재활용품: '19. 1. 1. ~ '21. 12. 31. 3/103 중고자동차: '19. 1. 1. ~ '19. 12. 31. 10/110
'19. 12	재활용품: '19. 1. 1. ~ '21. 12. 31. 3/103 중고자동차: '20. 1. 1. ~ '20. 12. 31. 10/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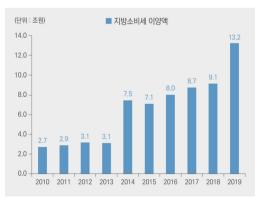
● 매입자납부특례

- 납세의무자(공급자)의 세금포탈* 방지 목적
- 2008년 금지금 거래에 대한 제도 도입 후 확대
- * 금도매업자에 대한 탈루 추징 규모('03~'05상반기): 8.422억원

2008	2009	2014	2015	2016
금지금	고금	구리스크랩	금스크랩	철스크랩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세수배분

- 2010년 부동산 경기불황과 종합부동산세 과세완화로 인한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액의 5%) 도입
- 2013년 부동산취득세 영구인하로 인한 지방재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 인상(5% → 11%)
- 2019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 인상 (11% → 15%)
- · 2020년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 추가 인상(15% → 21%)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Part 2

국 세 상속세·증여세

45 상속세 과세체계

- '유산세' 방식: 피상속인의 무상이전재산 전체를 과세
- 과세대상: 본래의 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보험금, 신탁재산 등), 추정 상속재산 (상속 전 1년내 2억원, 2년내 5억원 이상, 처분 시 가산)
- 세율: 10~50% 초과 누진세율, 세대생략시 30% 할증과세*

과세표준	1억원	1~5억원	5~10억원	10~30억원	30억원~
세율	10%	20%	30%	40%	50%

[※] 할증과세: 미성년자인 세대생략 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시 40% 할증과세하되, 대습상속은 적용배제

● 비과세 및 공과금 등 공제

- 비과세: 국가·지자체·공공단체 유증시, 분묘 금양임야·묘토, 족보, 제구 등
- 공제: 공괴금, 장례비용(500만원~1천만원), 국가·지자체·금융기관 등 채무

● 세액공제

- 기납부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 단기재상속세액공제(1년내 100%, 매 1년마다 10%씩 체감)
-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신고세액공제(3%)

● 상속공제

구분	항목	공제내용	한도
	기초공제	2억원	
	배우자공제 법정상속지분내 실제 상속가액		30억원 (최소 5억원)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	
인적 공제	미성년자공제	1,000만원×19세까지 잔여연수	
0	연로자공제	1인당 5,000만원(65세 이상)	
	장애자공제	1,000만원×기대여명 연수 (통계청 고시)	
-	일괄공제	5억원	
가	업상속공제	200~500억원 한도	가업영위기간별 차등적용
영.	농상속공제	영농상속재산기액	15억원
	~2,000만원	2,000만원 순금융재산가액 전체	
금융 재산 공제	2,000만원~ 1억원	2,000만원	2억원
	1억원 초과	순금융재산가액의 20%	
재해손실공제		상속재산 멸실훼손시 손실가액 공제	
동거	주택상속공제	10년 이상 계속 동거시 주택가액 100% 공제	6억원

46 증여세 과세체계

● '유산취득세' 방식: 수증인의 실제 취득 재산에 과세

- 과세대상: 거주자의 모든 증여재산, 비거주자의 국내 모든 증여재산 및 국외예적금
- 유·무형, 법률적·시실적, 직·간접을 불문한 경제적 가치의 무상이전, 배우자 등 양도시 증여추정, 증여의제(명의 신탁 재산, 일감몰아주기 등)
- 10년내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

● 세율: 10~50% 초과 누진세율, 세대생략시 30% 할증과세[※]

과세표준	1억원	1~5억원	5~10억원	10~30억원	30억원~
세율	10%	20%	30%	40%	50%

[※] 할증과세: 미성년자인 세대생략 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시 40% 할증과세하되, 대습상속은 적용배제

● 비과세

•국가·지자체로부터의 증여재산, 부양의무자 간 생활·교육비 등

● 증여공제

- 증여재산공제: 배우자(10년간 합산기준 6억원 한도), 직계존비속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6촌(4촌) 이내 혈족 (취족)(1천만원 한도)
-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공제: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수수료(500만원 한도), 신용평가전문기관 수수료(1천만원 한도)

● 2004년 상속·증여세법 개정에 의해 포괄주의 증여개념 도입

•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 증여의 과세대상을 부의 무상이전이라는 넓은 의미로 정의

	증여세						
민법상 증여	증여의	증여의제(14개), 증여추정(2개)					
계약에 의한 무상이전	일반거래를 통한 무상이전	자본거래를 통한 무상이전	증여의제 유형과 유사사례	형식에 관계없이 직간접 무상이전			
	열거주의	열거주의(~'98)					
포괄 주의	유형별 포괄주의('99~'03)						
	완전 포괄주의('04~)						

47 상속·증여세 현황

● 상속세 및 증여세는 2019년 8.3조원, 국세대비 2.8%

(단위: 조원, %)

연도	국세(A)	상속·증여세(B)	비중(B/A)
2009	164.5	2.4	(1.5)
2010	177.7	3.1	(1.7)
2011	192.4	3.3	(1.7)
2012	203.0	4.0	(2.0)
2013	201.9	4.3	(2.1)
2014	205.5	4.6	(2.3)
2015	217.9	5.0	(2.3)
2016	242.6	5.4	(2.2)
2017	265.4	6.8	(2.6)
2018	293.6	7.4	(2.5)
2019	293.5	8.3	(2.8)



● 자산종류별 상속재산 구성비율

-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자산: ('09)67.8% → ('18)65.3%
- 주식 등 금융자산: ('09)26.1% → ('18)28.8%
- 기타재산: ('09)6.1% → ('18)5.9%



자산종류별 증여재산 구성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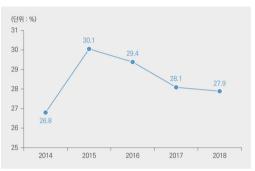
-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자산: ('09)57.1% → ('18)56.9%
- 주식 등 금융자산: ('09)39.0% → ('18)37.7%
- 기타재산: ('09)3.9% → ('18)5.5%



48 상속·증여세 실효세율 추이

● 상속세 실효세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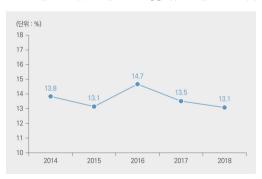
• 2014년 26.8%에서 2015년 30.1%로 상승 이후 2018년 27.9%로 하락



주: 실효세율 = (총결정세액 / 과세표준) × 10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증여세 실효세율 추이

• 2014년 13.8%에서 2016년 14.7%로 상승 이후 2018년 13.1%로 하락



주: 실효세율 = (총결정세액 / 과세표준) × 100 자료: 국세청,「국세통계연보」각 연도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9 국제비교: 상속·증여세 부담

● 2018년 기준 명목GDP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 0.4% 2018년 OECD 평균 0.1% 대비 0.3%p 가량 높음

(단위: %)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독일	미국	OECD 평균
0.6	0.4	0.4	0.3	0.2	0.1	0.1



주: OECD Statistics의 '4300 Estate, inheritance and gift taxes' 기준 자료: OECD Statistics(2020.7.31, 기준)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0 국제비교: 상속·증여세제

● (상속세제) OECD 주요국 동향

국가	상속세 유무	세율	최근 주요 개정	
			2001	감세법안가결 ('02~'09년 비과세 확대, 최고세율 단계 인하, '10년 유산세 폐지)
미국		18~40% (12단계	2010	유산세 일시 정지
미국		(12년세 누진 세율)	2011	유산세 부활
			2013	최고세율 인상, 생존 배우자가 사망 배우가 남긴 공제액을 사용할 수 있는 조치 항구화
영국	0	40%	2007	생존 배우자가 사망 배우자가 남긴 공제액을 사용할 수 있게함
			2010	비과세 물가연동 동결
			2006	생애증여의 누적기간 축소 (10년→6년)
		직계: 5~45% (7단계 누진세율)	2007	배우자 등 과세 면제, 공제액 인상(직계, 형제)
프랑스	0	형제: 5~45% (2단계 누진세율)	2012	세율인상(직계), 생애증여 누적기간 연장(6년→10년), 공제액 인하(직계)
		4촌이내	2013	공제액과 세율 등의 물가연동 폐지
		친족: 55% 기타: 60%	2014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5년말 이전 토지 증여 및 2016년말 이전 신규 주택의 자녀 및 증손자녀 증여 거래 특별공제

국가	상속세 유무	세율		최근 주요 개정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7~30% (7단계 누진세율)	2008	공제액인상, 세율적용금액 인상,
독일	○ 양부모 15~43	형제, 양자녀, 양부모 등: 15~43% (7단계 누진세율)	2006	세율인상(2구간 및 3구간)
		기타:	2010	세율인하(2구간)
		30~50% (2단계 누진세율)	2016	가업상속세제 사업용 자산 요건 강화
		배우자. 직계:	2001	상속세폐지
이탈 리아	"	4% 형제, 기타 친족: 6% 기타: 8%	2006	상속세 재도입(유산취득세방식), 단일세율
			2007	형제를 배우자, 직계 범위로 구분하여 기타 친족 세율 적용
		10~55% (8단계 누진세율)	2003	최고세율 인하, 상속시 정산과세 제도 도입
일본	일본		2008	가업승계납세유예제도 시행
			2013	최고세율 인상, 기초공제 인하
캐나다	×	-	1972	상속세 폐지, 사망시 양도소득과세 도입

51 상속·증여세 최근 개정 동향

- 최근 부의 변칙적 증여 방지를 위한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가업승계세제 중심으로 상속·증여세 개정
-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 부의 변칙적 증여 방지를 위해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도입('11년),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도입('15년), 대·중견기업 과세강화('17년)

2011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도입: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신설
2013	• 중소·중견기업 과세완화: 정상거래비율 및 한계보유 비율 차등 (일반/중소·중견, 각각30%/50%, 3%/10%)
2015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신설: 지배주주 주식보유 비율 기준 30%
2017	• 대·중견기업 과세강화: 정상거래비율 및 한계보유비율 인하 (대/중견, 각각 5%/0%, 20%/5%), 특수관계거래비율 20% 초과하면서 거래액 1천억원 초과시 과세, 과세 중견· 중소기업 범위 확대(자산 5조원 이상)
2018	•외국인으로 보는 외국법인의 범위 축소: 주식 30% 이상 직·간접 소유하는 경우 외국인으로 보지 않음
2019	•부의 편법이전으로 보기 어려운 거래를 과세대상에서 제외

● 가업승계세제 확대

• 2007년 이후 매년 대상요건 완화 및 공제금액 인상 등이 이루어졌고, 2019년 들어 사후요건 등 완화

2008	• 가업상속 요건 완화: 중소기업 공제비율 및 한도 상향 조정 (20% → 40%, 30억원 → 60~100억원), 사업영위기간 완화 (15년 → 10년)		
2009	중소기업 적용 요건 완화: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 기간 가업영위기간의 80% 이상 → 가업 영위기간의 60% 이상, 상속개시전 10년 중 8년 이상		
2011	• 공제 확대: 공제율 40% → 70%, 공제한도 피상속인 가업영위 기간에 따라 60~100억원 → 100~300억원		
2012	• 공제 대상 확대: 공제대상 제외기업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500억원 초과 → 2,000억원 초과		
2013	• 제도 개선: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완화(중소·중견 매출액 2천억원 이하→3천억원 미만), 공제금액 및 한도 확대(가업 상속재산의 70% → 100%, 한도 경영 10년/15년/20년 이상, 100억원/150억원/300억원→200억원/300억원/500억원)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기한 폐지		
2018	• 가업상속 후 합병·분할시 고용유지여부 판단기준 신설: 근무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 • 가업상속공제 후 지분 감소시 추징배제 사유 추가: 균등 무상감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무상감자, 출자전환 • 가업상속 대상 업종 재분류		
2019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 • 고용유지의무 완화(총급여액 평균 80%이상 추가) • 가업상속공제 관련 기업인 성실경영책임 강화		

자료: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각 연도.

Part 2

국 세 기타세목

52 개별소비세

● 특정 물품의 소비행위 또는 특정 장소의 입장행위 및 유흥 음식행위 등을 담세력으로 보아 이에 부과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제조장 과세물품	과세물품을 제조·반출하는 자	보석·귀금속, 시계, 모피: 기준가격 석유류: 반출수량 그 외: 반출가격
수입 과세물품	수입업자	관세의 과세가격+관세
과세장소	과세장소 경영자	인원
과세유흥장소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요금
과세영업장소	과세영업장소 경영자	총매출액

● 세율

과세 물품	• 투전기, 오락용품 등 20%, • 보석·귀금속, 시계, 모피 등 20%, • 자동차 5% • 궐련 594원, 궐련형 전자담배 529원, 20개비 기준
	• 휘발유 475원/ Ø (529원/ Ø), 경유 340원/ Ø (375원/ Ø) • 발전용 유연탄 46원/kg(43원~49원/kg) • 천연가스 60원/kg (발전용 12원/kg) 등
과세 장소	• 입장행위: 경마장 1,000원, 경륜·경정장 400원, 회원제골프장 12,000원, 카지노 50,000원 등
	• 유흥주점 등 음식요금의 10% • 카지노는 매출액 500억원/1,000억원 기준 0/2/4%

주: ()는 탄력세율이 적용된 값임

● 최근 주요 개정 동향

2017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인상 (30원 → 36원/kg)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율 인상(126원 → 529원/20개비)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종료
2018	 유연탄・발전용 천연가스 세율 조정 (유연탄 36원 → 46원/kg, 발전용 천연가스 60원 → 12원/kg) 노후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감면 신설(70%)
2019	노후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70%) 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22년) 제주도·위기지역 골프장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 개별소비세는 2019년 9.7조원, 국세 대비 3.3%



53 주세

주류(주정, 알코올분 1도 이상 음료)를 제조하여 출고·수입하는 자의 주류 수량 또는 가격에 대해 부과

주종		세율
주정		57,000원/kl
		(알코올 1%초과마다 600원 가산)
	탁주	41,700원/kl
	맥주	830,300원/kQ
발효주	청주	30%
	양주	30%
	과실주	30%
증류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72%	

● 최근 주요 개정 동향

2019

 탁주와 맥주의 세율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 (탁주: 5% → 41,700원/kl, 맥주: 72% → 830,300원/kl, 생맥주: '21말까지 664,200원/kl, 탁주와 맥주에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

● 주세는 2019년 3.5조원, 국세 대비 1.2%



54 교통·에너지·환경세

●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재원확보를 위해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1994년에 10년 한시 '교통세'로 신설, 이후 '교통·에너 지·환경세'로 변경해 2021년까지 연장

● 세율

- 휘발유 및 대체유류: 475원/0
- 경유 및 대체유류: 340원/0
- 기본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탄력세율 조정이 가능하며, 현행 탄력세율은(휘발유) 529원/ 1 (경유) 375원/ 1 위

● 면세

- 수출 및 우리나라 주둔 외국군대 납품, 외교관 등
- 최근 주요 개정 동향

700L E0

경유와 등유의 혼합유가 아닌 100% 등유를 자동차에 주유하더라도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19년 14.6조원, 국세 대비 5.0%



55 종합부동산세

- 부동산보유의 조세형평성 제고 및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위해 2005년 도입
-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 인별 합산한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
 - 과세기준액: 주택분(개인: 1세대 1주택자 9억원, 다주택자 6억원, 법인: 적용하지 않음), 종합합산토지분 5억원, 별도합산토지분 80억원

구 분		과표	세율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초과누진공제
		3억원 이하	0.6/1.2%	_
		6억원 이하	0.8/1.6%	180/360만원
주	EH	12억원 이하	1.2/2.2%	420/840만원
Ť	끡	50억원 이하	1.6/3.6%	1,140/2,160만원
		94억원 이하	2.2/5.0%	7,220/15,840만원
		94억원 초과	3.0/6.0%	16,900/37,840만원
	종합 합산	과표	세율	초과누진공제
		15억원 이하	1.0%	_
		45억원 이하	2.0%	1,500만원
E TI		45억원 초과	3.0%	7,500만원
토지	별도	과표	세율	누진공제
		200억원 이하	0.5%	_
	합산	400억원 이하	0.6%	1억원
		400억원 초과	0.7%	2.2억원

^{*}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주택/2주택 이상

[※] 법인주택분의 경우, 과표 구간 구분없이 3.0/6.0% 세율 적용

●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 및 결정세액

구 분		재산의 종류	재산세	종부세
건 축 물	주 거 용	주택 별장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기숙사 등	과세 과세 과세	과세 × ×
至	기타	• 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 등)	과세	×
Sob ・ 분리 すか ・ 増り ・ ・ ・ ・ ・ ・ ・ ・ ・ ・ ・ ・ ・ ・ ・ ・ ・ ・ ・		•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농지·임야 등 • 분리과세대상 중 기준초과토지 • 별도합산과세대상 중 기준초과토지 • 분리과세 ·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토지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지	별도 합산	•건물 부속토지 •인·허가 받은 사업용토지	과세 과세	과세 과세
	분리 과세	• 농지·임야 등 • 공장용지, 공급목적 토지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 과세 과세	× × ×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20.

● 종합부동산세는 2019년 2.7조원, 국세 대비 0.91%



56 증권거래세

-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매매결제되거나 금융투자업자 및 양도자에 의해 양도되는 주권 또는 지분에 대해 과세
 -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은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에 거래수량을 곱한 금액 등을 과세표주으로 한

● 세율

- 법정세율: 거래금액(비상장주식 등)의 0.45%
- 탄력세율: 유가증권 0.10%(농특세율 0.15%), 코스닥 0.25%, 코넥스 0.10%

● 비과세

• 국가, 지자체의 양도, 자본시장법(제119조)에 따른 주권매출,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 등

● 최근 주요 개정 동향

• 비상장주식 및 장외거래 세율 인하 (0.5% → 0.45%)

● 증권거래세는 2019년 4.5조원, 국세 대비 1.5%



57 인지세

● 재산에 관한 권리 등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문서 작성시 과세기준 초과자에 대해 부과

12 00 12 E 1 10 1	-1-10-122 -2-10-10-11-11-11-11
과세문서	세액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2. 금융·보험 기관과의 소비대차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관한 증서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등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4.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등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양도에 관한 증서 5. 종합체육시설 또는 승마장, 휴양 콘도미니엄 등 회원권	10억원 초과: 35만원
6. 계속적·반복적 거래증서 - 신용카드회원/유선·무선전화가입/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신청서	300원/1천원/300원
	1만원: 50원
7. 상품권 및 선불카드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 200원
(모바일 상품권은 5만원 초과분)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400원
	10만원 초과: 800원
8.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400원
9. 예·적금에 관한 증서, 통장등	100원

● 인지세는 2019년 0.8조원, 국세 대비 0.3%



58 교육세

● 금융보험업자 및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등 납세의무자에 대해, 본세에 추가하여 부과되는 부가세(surtax)

● 세율

-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의 0.5%
- 개별소비세액의 30% (등유, 중유, 수송용 부탄은 15%)
- 교통·에너지·화경세액의 15%
- 주세액의 10%(맥주 및 증류주 등 주세 세액의 30%)

● 비과세

- 금융·보험업자가 행하는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금액
- 교육세는 2019년 5.1조원, 국세 대비 1.7%



59 농어촌특별세

- UR타결에 따라 농어촌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세로서 1994년 7월 도입, 2024년 6월까지 30년간 적용
 - 조세감면액. 취득세액 등에 부과되는 부가세(surtax)

과세표준	세율	부과 대상	
조세감면액	20%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등록면하세 등록분 감면액	
	10%	세금우대종합저축 감면액	
개별소비세액	10%	고급가구, 모피, 오락기 등 사치성물품	
게글꼬미제곡	30%	골프장 입장	
증권거래금액	0.15%	상장주식	
취득세액 *표준세율 2% 적용	10%	부동산 등 취득자 *서민·농가주택, 농지, 차량취득 등 제외	
레저세액	20%		
종합부동산세액	20%		

● 농특세는 2019년 3.9조원, 국세 대비 1.3%



60 관세

◆수출·입에 따라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우리나라는 수입관세만 부과

- 과세표준: 수입물품의 가격인 '과세가격'* 또는 '수량'
 - ※ 당해물품 거래가격, 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 등에 기초한 '관세평가' (customs valuation)를 통해 결정
- 관세율: 우리나라 관세법상의 국정세율'(기본관세, 잠정관세, 탄력관세 등), 조약으로 정해진 '협정세율' (WTO양하세율, FTA협정세율 등)* ※ 단 관세법상의 적용수위에 따름
- 관세 비과세·감면제도는 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자유무역지역법 및 FTA 등 협정에 근거
 - 외교관 물품, 정부 용품, 재수출·재수입 환경오염방지 물품 등 면세
 - 외국인투자,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자재 등 감면

● 최근 주요 개정 동향

2019

- 관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신설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국가 지원 신설
- 중소·중견기업 보세공장의 수입 기계·장비에 대한 관세 감면 신설
-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
- 보세판매장 구입물품 환불 시 관세 환급 허용

● 관세는 2019년 7.9조원, 국세 대비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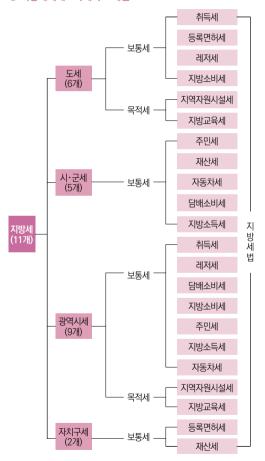


Part 3

지방세

61 지방세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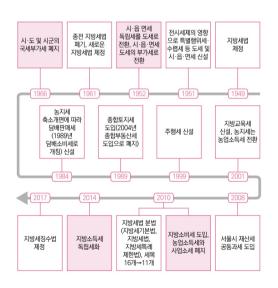
● 지방세체계: 다세목 1세법



62 지방세제의 변천

● 지방세제의 변천

- 1949년 지방세법 제정으로 새롭게 시행된 지방세제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지방재정강화 목적으로 국세의 부가세 중심의 체계
- 1966년 중앙집권 체제하에서 국세부가세를 폐지하고 독립세 형태의 지방세 체계를 갖추게 되었음
- 1984년 농지세 축소 개편에 따라 담배판매세 도입과 1989년 부동산 보유세제 강화를 위해 종합토지세 도입
- 2000년대 이후 지방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 도입(2010년)과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2014년)가 이루어짐
- 2010년말 지방세법 분법과 더불어 세목정비(16개 세목 → 11개 세목)가 이루어짐



63 지방세 세목별 과세체계

세목	과세대상		세율	
취득세	부동산, 차량 등 취득		• 일반세울: 2.8%, 3.5%, 4.0% 등 • 유상취득(주택): 1.0~3.0%, 8.0%, 12.0% 등 • 중과세율: 4.4%, 8.0%, 8.4% 등	
	종합소득, 퇴직소득		0.6~4.2%	
지방	양도소득		0.6~7.0%	
소득세	법인소득		1.0~2.5%	
	특별징수		법인·소득세액의 10.0%	
재산세	재산세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주택: 0.1~0.4% 건축물: 0.25~4% 토지 종합: 0.2~0.5% 별도: 0.2~0.4%, 분리: 0.07~4% 선박: 0.3~5% 항공기: 0.3%	
	도시 지역분	토지, 건축물, 주택	법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 0.14%	
지방 소비세	부가가치세(국세)		부가가치세액의 21%	
자동차세	소유분	승용 자동차	1cc당 18~200원 (승합자동차 등은 다름)	
	주행분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통세액의 36%(탄력세율 26%)	
담배 소비세	담배 제조 및 수입업자		20개비(1갑)당 1,007원 (종류별 다름)	
등록 면허세	등록	부동산 등기	보존(0.8%), 이전(1.5%, 2.0%), 설정(0.2%)	

주: 세목은 보통세, 목적세 순, 징수액이 큰 순서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세목	과세대상		세율	
등록 면허세	등록	선박 등기	보존(0.02%) 기타(건당 15,000원)	
		차량의 등록	소유권 등록 (비영업용 5%, 경차 2%)	
		기계장비	소유권 등록(1.0%), 설정 (0.2%), 기타(10,000원)	
		법인등기	• 영리법인: 설립(0.4%) 자본증가(0.4%) • 비영리법인: 설립(0.2%) 출자증가(0.2%)	
	면허	가족 인허가 등 면허	18,000~67,500원	
주민세	균등분	개인·법인	개인(1만원 이하), 법인(5~50만 원)	
	자산분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시)	
	종업원분	급여액	급여총액의 0.5% (1억 3,500만원 초과)	
레저세	승마(승자) 투표권 발매액		발매액의 10%	
지방 교육세	취득세액, 등록분 등록면허세, 레저세, 균등분 주민세, 재산세액, 자동차세액, 담배소비세액		각각 20%(취등분 20%제외), 20%, 40%, 10~25%, 20% 30%, 43.99%	
지역자원 시설세	특정 시설분	건축물, 선박	재산가액의 0.04~0.12%	
	특정 자원분	지하수	채수량 1㎡당 20~200원	

64 지방세 수입

● 최근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세수호조

(단위: 조원, %)

	2012	2013	2014	2015
합계	53.9 [3.1]	53.8 [-0.3]	61.7 [14.8]	71.0 [15.0]
취득세	13.8	13.3	16.4	20.8
지방소득세	10.3	10.3	9.7	12.8
재산세	8.0	8.3	8.8	9.3
자동차세	6.6	6.7	6.9	7.1
지방소비세	3.0	3.1	5.8	6.0
지방교육세	5.1	5.0	5.5	5.7
담배소비세	2.9	2.8	3.0	3.0
주민세	0.3	0.3	1.4	1.5
등록면허세	1.2	1.3	1.5	1.8
지역자원시설세	0.9	0.9	1.1	1.4
레저세	1.1	1.0	1.1	1.1
기타	0.7	0.6	0.6	0.4

주: []는 전년대비 증가율값, ()는 전체 지방세수 중 세목별 비중값임 자료: 핵정안전부

시표 성공간인구

(단위: 조원, %)

2016	2017	2018	20	19
75.5 [6.3]	80.4 [6.5]	84.3 [4.9]	90.5 [7.3]	(100.0)
21.7	23.5	23.8	23.9	(26.4)
13.1	14.4	16.7	17.4	(19.3)
9.9	10.7	11.5	12.7	(14.0)
7.6	7.8	7.9	7.7	(8.5)
6.4	7.3	7.5	11.3	(12.5)
6.3	6.4	6.5	6.7	(7.4)
3.7	3.6	3.5	3.4	(3.7)
1.8	1.9	2.0	2.1	(2.4)
1.7	1.6	1.7	1.8	(2.0)
1.4	1.5	1.6	1.7	(1.9)
1.1	1.1	1.0	1.0	(1.1)
0.8	0.6	0.5	0.7	(0.8)

주: []는 전년대비 증가율값, ()는 전체 지방세수 중 세목별 비중값임 자료: 행정안전부

65 2018년 시도별 세목별 지방세 징수액

(단위: 조원)

구분	계	취득세	등록 면허세	레저세	담배 소비세	지방 소비세
계	84.32	23.81	1.72	1.02	3.48	7.46
서울	20.70	5.19	0.40	0.14	0.61	1.40
부산	4.94	1.27	0.10	0.10	0.21	0.57
대구	3.23	0.93	0.06	0.01	0.15	0.37
인천	4.47	1.52	0.09	0.02	0.20	0.31
광주	1.85	0.46	0.04	0.02	0.09	0.23
대전	1.74	0.39	0.03	0.02	0.09	0.23
울산	1.95	0.43	0.03	0.00	0.08	0.18
세종	0.67	0.29	0.12	0.00	0.02	0.08
경기	22.81	7.45	0.47	0.53	0.86	1.43
강원	2.06	0.62	0.04	0.00	0.13	0.26
충북	2.28	0.62	0.05	0.00	0.12	0.26
충남	3.51	0.96	0.07	0.02	0.17	0.36
전북	2.04	0.53	0.05	0.00	0.12	0.30
전남	2.39	0.56	0.05	0.00	0.13	0.29
경북	3.63	0.85	0.08	0.00	0.20	0.45
경남	4.62	1.18	0.10	0.10	0.23	0.60
제주	1.46	0.54	0.04	0.06	0.06	0.14

(단위: 조원)

	(CII) — C					
주민세	지방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 교육세	과년도 수입
1.99	16.71	11.53	7.89	1.63	6.54	0.54
0.53	5.50	3.68	1.28	0.29	1.47	0.22
0.10	0.83	0.67	0.55	0.12	0.39	0.02
0.06	0.49	0.42	0.41	0.05	0.25	0.02
0.09	0.64	0.65	0.50	0.10	0.36	-0.01
0.04	0.35	0.19	0.24	0.03	0.14	0.02
0.05	0.28	0.23	0.22	0.03	0.14	0.01
0.08	0.52	0.24	0.21	0.05	0.13	-0.02
0.01	0.08	0.08	0.04	0.01	0.05	0.00
0.47	4.30	3.04	1.84	0.37	1.91	0.12
0.04	0.27	0.22	0.23	0.05	0.17	0.02
0.06	0.45	0.22	0.27	0.04	0.17	0.02
0.11	0.72	0.37	0.34	0.11	0.26	0.03
0.05	0.27	0.21	0.30	0.04	0.16	0.01
0.06	0.45	0.22	0.35	0.08	0.17	0.02
0.11	0.72	0.39	0.44	0.13	0.27	0.00
0.12	0.64	0.56	0.56	0.10	0.38	0.04
0.01	0.19	0.15	0.11	0.02	0.13	0.01

Part 3

지방세 지방세목

66 취득세

- 부동산·차량 등 과세물건 취득에 대해 과세
 - 2011년부터 등록세 중 취득관련 과세대상과 통합
- 과세표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가액
 - 단.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작을 경우 시가표준액 적용
- 세율: 일반세율 2.8%, 3.5%, 4.0% 등 유상취득(주택) 1.0~3.0%, 8.0%, 12.0% 등 중과세율 4.4%, 8.0%, 8.4% 등
- 취득세는 2019년 23.9조원, 지방세 대비 26.4%



67 지방소득세

- 소득크기에 따른 소득분(특별장수, 개인소득세분, 법인세분)
 으로 구분
- 과세표준: 「소득세법」및 「법인세법」 상 소득별 과세표준규정을 준용
- 세율: 소득세 및 세율의 10% 수준 부과
 -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0.6%
	1,200만원~4,600만원	1.5%
	4,600만원~8,800만원	2.4%
종합소득	8,800만원~1.5억원	3.5%
	1.5억원~3억원	3.8%
	3억원~5억원	4.0%
	5억원 초과	4.2%
양도소득	양도소득 최종금액	자산유형 및 보유형태별 세율
특별징수	「소득세법」 상 원천징수액	원천징수액의 10%
탄력세율	지자체별	세율의 50%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	
HOLA E	2억원~200억원	2%	
법인소득	200억원~3천억원	2.2%	
3천억원 초과		2.5%	
양도소득 과세특례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표준 × 1%(미등기 4%)	
특별징수	「법인세법」 상 원천징수액	원천징수액의 10%	
탄력세율	지자체별	세율의 50%	

● 지방소득세는 2019년 17.4조원, 지방세 대비 19.3%



68 재산세

●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보유에 대해 과세

● 과세표준

-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50~90%(시행령 70%)
- 주택: 시가표준액의 40~80%(시행령 60%)

● 세율

- 주택
- ① 별장: 과세표준액의 4%
- ② 기타주택

과세표준	세율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초과금액의 0.15%	
1억 5천만원 초과 3억 이하	19만 5천원+초과금액의 0.25%	
3억원 초과	57만원+0.4%	

③ 건축물

과세표준	세율
골프장, 고급오락장용건축물	4%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골프장은 '09년말까지 2%)
기타 건축물	0.25%

• 토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 분리과세대상 토지 제외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0.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초과금액의 0.5%

② 별도합산과세대상: 사무실·상가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등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0.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초과금액의 0.4%

③ 분리과세대상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0.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4%, 이외 토지: 과세표준액의 0.2%
- 선박: 고급 5%, 기타 선박 0.3%
- 항공기: 0.3%

● 재산세는 2019년 12.7조원, 지방세 대비 14.0%



69 자동차세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손상 및 환경오염 등 부담금적 성격을 가짐
-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 과세표준: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 세율

- 주행분 자동차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
- 소유분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용도별로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하고, 자동차 종류에 따라 승용·승합·화물·3륜 이하 소형자동차로 구분하여 세율 차등화
- 승용차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	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이하	18원	1,000cc이하	80원	
1,600cc이하	18원	1,600cc이하	140원	
2,000cc이하	19원	2,000cc이하	200원	
2,500cc이하	19원	-	-	
2,500cc초과	24원	-	_	

• 승합자동차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행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 화물자동차

12 10 1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1,000kg 이하	6,600원	28,500원
2,000kg 이하	9,600원	34,500원
3,000kg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kg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kg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kg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kg 이하	45,000원	157,500원

• 특수자동차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 기타

1대당 연세액				
gg G	비영업용			
3륜이하 소형자동차 3,300원		18,000원		
전기자동차	20,000원	100,000원		

● 자동차세는 2019년 7.7조원, 지방세 대비 8.5%



70 지방소비세

-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세원을 공유하는 지방세목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수입 거래에 부과
- 과세표준: 부가가치세액에서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
- 세액: 과세표준의 21%
 - 2010년 5%로 도입 후, 2014년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보전을 위해 11%로 인상
 -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2019년 15%, 2020년 21%로 인상
 - 5%p분: 지역별 소비지출 반영
 - 6%p분: 취득세율 인하4)에 따른 지역별 취득세 등의 감소 반영
 - 10%p분: 국고보조금의 지방사업 전환과 연계한 인상분(~2022.12.31.) 및 지역별 소비 반영
 - ※ 수도권으로 안분된 지방소비세액의 35%는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조성되어 재분배
- 지방소비세는 2019년 11.3조원, 지방세 대비 12.5%



⁴⁾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13년 8월 28일 이후의 주택 취득세율을 4%에서 취득가액 6억원 미만 1%, 6~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인하

71 담배소비세

-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 소비 행위 과세
- 과세표준: 개수비, 중량(a)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

세율

- 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 2종 파이프 담배 1그램당 36원
- 3종 엽궐련 1그램당 103원
- 4종 각련 1그램당 36원
- 5종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연초고형물 1그램당 88원(궐련형 20개비당 897원)
- 6종 물담배: 1그램당 715원
- 씹는담배 1그램당 364원
- 냄새맡는 담배 1그램당 26원
- 담배소비세는 2019년 3.4조원, 지방세 대비 3.7%
 - 담배값 인상('15)



72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 납세의무자:

- 취득세(차량 취득세 제외)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자동차 등록면허세 제외)
- 레저세
- 주민세균등분
- 재산세
- 자동차세(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 포함)
- 담배소비세

● 세율:

- 취득세 (표준세율 0.2%) 적용한 금액의 20%
- 등록세액의 20%, 레저세액의 40%, 재산세액의 20%
- 주민세균등분세액의 10%(인구 50만 인상 시 25%)
- 자동차세액의 30%
- 담배소비세액의 43.99%

● 지방교육세는 2019년 6.7조원, 지방세 대비 7.4%



73 등록면허세

● 2011년 등록세 중 저당권·전세권 등기 등 취득의 전제없이 이루어지는 등기·등록과 면허, 인·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를 통합

● 세율

구분	내용
부동산	소유권 이전: 유상 2%, 무상 1.5%, 상속 0.8% 소유권 보존: 0.8% 경매신청, 가압류, 전세권, 저당권, 가등기, 임차권: 0.2%
차량	소유권 등록: 비영업용 승용차 5%, 경차 2%, 비승용차 3% 저당권 설정·이전 0.2%, 그 외 1.5만원
기계장비	소유권 등록 1%, 저당권 0.2%, 기타 1만원
법인등기	설립·증자 0.4%, 비영리의 경우 0.2%, 본점이전 112,500원, 지점설치 40,200원
기타권리	동산·채권·지식재산권 담보권의 담보설정 0.1%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의 이전 1.8만원(상속 1.2만원)
면허분 (제1종~제5종)	인구 50만 이상 시 등: 18,000~67,500원 기타 시: 7,500~45,000원 구: 4,500~27,000원

● 등록면허세는 2019년 1.8조원, 지방세 대비 2.0%



74 주민세

● 소득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주민에게 과세되는 '주민세 교등분'과 환경개선·정비의 필요경비 충당을 위해 사업소에 과세되는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분

● 세율

구분	내용			
균등분	① 개인: 1만원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 조례에 규정 ② 개인사업자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표 4,800만원이상): 5만원 ③ 법인: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원~50만원			
재산분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			

● 주민세는 2019년 2.1조원. 지방세 대비 2.4%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주민세 이관('14), 자치단체별 조례 개정 (개인 균등분 1만원선 인상) 등으로 세수 증가



75 지역자원시설세

- 지하·관광 등 지역자원 보호 및 개발, 소방 등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등 필요경비 충당하기 위한 지방세
 - 2011년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를 통합

● 과세표준과 세율

•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세율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지하수	세제곱미터당 음용수 200원, 온천수 100원, 기타 20원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0.5%			
컨테이너	컨테이너 1티이유(TEU)당 1만5천원 1킬로와트시(kWh)당 1원 1킬로와트시(kWh)당 0.3원			
원자력발전 발전량				
화력발전 발전량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세율	비고		
600만원 이하	0.0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0.0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0.06%	화재위험 건축물은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0.08%	당해 세율의 100분의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0.1%	200으로 함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0.12%			

• 단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원자력발전과 화력발 전은 제외)

● 지역자원시설세는 2019년 1.7조원, 지방세 대비 1.9%



76 레저세

- 경마, 경륜, 경정 및 소싸움 영위 사업자에게 과세
- 과세대상:
 - 경주사업자(경류, 경정법)
 - 한국마사회(한국마사회법)
 - 소싸움경기시행사(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 세율: 발매액의 10%
- 레저세는 2019년 1.0조원, 지방세 대비 1.1%



Tax Statistics 2020

Part 4

조세지출



77 국세감면 현황

● 국세감면액 2018년 44.0조원, 2019년 50.1조원*

- 국세감면율: 2018년 13.0%, 2019년 14.5%로 상승
- 명목GDP 대비 국세감면 비중은 2018년 2.3%에서 2019년 2.6%로 상승
 - ※ 국세감면율(%) = {국세감면액/(국세수입액+국세감면액)} × 100 GDP 대비 조세감면 비중(%) = (국세감면액/명목GDP) × 100
 - * 2019년은 잠정치





78 국세 세목별 조세지출

- 2019년(잠정) 기준 세목별 조세감면 규모는 소득세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순서임
 - 세목별 평균 감면율*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순임
 - * { 세목별 감면액/(세목별 조세수입액 + 세목별 감면액) } × 100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기타	합계
조세수입액 (A)	83.6	72.2	70.8	66.9	293.5
조세감면액 (B)	30.6	7.4	9.4	2.8	50.1
조세감면 비중 [=B/A]	36.6	10.2	13.3	4.1	17.1
평균 감면율 [=B/(A+B)]	26.8	9.3	11.7	4.0	14.6



● 세목별 주요 조세지출 항목 현황

2018년, 1천억원 초과 기준

소득세: 25개 항목

- 1.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3.5조원)
- 2. 연금보험료 공제(2.8조원)
- 3. 신용카드 소득공제(2.1조원)
- 4. 8년 이상 자경·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1.4조원)
- 5.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 부담금에 대한 비과세(1.4조원)
- 6 근로장려금(1.4조원)
- 7. 자녀세액공제(1.3조원)
- 8. 교육비 특별공제(1.3조원)
- 9. 의료비 특별공제(1.2조원)
- 10.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1.1조원)
- 11. 연금계좌세액공제(1.1조원)
- 12. 개인기부금 특별공제(0.9조원)
- 13.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과세특례(0.6조원)
- 14. 자녀장려금(0.5조원)
- 75. 경로우대자 추가공제(0.5조원)
- 16.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특별공제(0.4조원)
- 17.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0.3조원)
- 18. 장애인 추가공제(0.3조원)
- 19.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0.2조원)
- 2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0.2조원)
- 21.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 이자소득 비과세(0.2조원)
- 22. 국외 근로급여 비과세(0.2조원)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0.1조원)
- 24.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0.1조원)
- 25.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0.1조원)

법인세: 12개 항목

-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3조원)
- 2.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 세액공제(1.1조원)
- 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1.1조원)
- 4. 법인의 공장·본사 수도권밖 이전 법인세 감면(0.8조원)
- 5. 법인기부금의 손금산입(0.7조원)
- 6.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0.6조원)
- 7.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0.3조원)
- 8.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0.2조원)
- 9.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의 세액공제(0.2조원)
- 10.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0.2조원)
- 11.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0.1조원)
- 1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0.1조원)

부가가치세: 9개 항목

- 1.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2.7조원)
- 2.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1.9조원)
- 3.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1.7조원)
- 4.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영세율(0.9조원)
- 5.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0.3조원)
- 6.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0.2조원)
- 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0.2조원)
- 8.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0.1조원)
- 9. 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0.1조원)

79 예산분류별 조세지출

● 예산분류 기준으로 2019년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보건, 농림수산 분야의 조세지출 비중이 높음

•동 4개 분야의 조세지출금액 합계액이 43.0조원으로 전체 조세지출금액 50.1조원 대비 85.7% 차지

(단위: 조원, %)

예산분류	감면액	비중
일반공공행정	2.9	(5.7)
공공질서 및 안전	-	(-)
외교·통일	0.001	(0.001)
국방	0.03	(0.1)
교육	1.4	(2.8)
문화 및 관광	0.04	(0.1)
환경	1.2	(2.4)
사회복지	17.5	(34.9)
보건	6.7	(13.4)
농림수산	6.0	(12.0)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2.8	(25.4)
교통 및 물류	0.5	(1.0)
통신	-	(-)
국토 및 지역개발	1.2	(2.4)
과학기술	0.003	(0.01)
예비비	-	(-)
합계	50.1	(100.0)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9.

● 4대 주요 조세지출 분야의 조세지출 항목 사례

	2019년, 1조원 초과 기준
사회복지 (17.5조원)	 근로장려금(4조 9.552억원)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3조 307억원) 자녀세액공제(1조 2,333억원) 연금계좌세액공제(1조 1,539억원) 등
보건 (6.7조원)	 국민건강보험료 특별소득공제(3조 8,676억원)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 비과세(1조 5,352억원) 의료비 세액공제(1조 2,675억원) 등
농림수산 (6.0조원)	• 농·축·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1조 8,673억원)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조 4,324억원) • 농·임·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1조 1,976억원) 등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12.8조원)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3조 310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2조 2,553억원)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조 2,795억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조 357억원) 등

주: ()의 감면금액은 2019년 전망 기준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9.

80 조세특례평가제도

- 2010년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에 따라「조세지출예산서」가 예산안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되고 있음
- 2012년 성과관리 도입 후 2015년부터 조세특례 평가제도를 시행, 평가결과를 행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토록 함
 - 소관부처의 조세지출 자율평가 결과는 매년 4월 30일까지 정부에 제출
 - 2015년부터 조세특례 평가제도를 시행, 매해 외부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수행된 평가결과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
 - ※ 연간 국세감면액 300억원 이상 조세특례를 대상으로 하여, 신규 도입안 '사전평가'('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와 일몰도래 조세특례에 대한 '사후평가'('조세특례 심층평가')로 평가가 이루어짐

● 2019년 조세특례평가: 총18건 (의무 5건, 임의 13건)

(단위: 억원)

신규 조세특례 도입안 평가(2건)				
1. 외국인 관광객 숙박업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문체부 건의)	2,106	정책 목표 불명확 경제효과가 미미하며 형평성을 저해	미도입	
2.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 특례 (기재부 건의)	그 일만 성질단세사인이		도입	
일몰	도래 조세특	특례 평가(3건)		
1.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11,414	정책의 필요성은 존재하나, 생산성 증대 효과 미입증	재설계	
2.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3,182	정부개입 타당성 등은 인정되나, 중장기적으로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할 정책 재설계 필요	재설계	
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297	정부개입 타당성 및 정책의 효과성 존재	단순연장	

주: '예비타당성 평가' 감면액은 정부 추정자료, '심층평가' 감면액은 2018년 실적차임 자료: 정부,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II)', 2019. 9: 정부, '조세특례 심층평가((~III)', 2019. 9.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81 조세지출 관리규정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국가재정법」제88조)

국세감면율은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 + 0.5%p)의 법정한도
 ※ 국세감면율(%) = {국세감면액 /(국세수입액+국세감면액)} × 100

최저한세 및 감면한도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제132조의2, 제133조)

- 법인세 최저한세(조특법 제132조①)
 - : 과세표준 100억원이하/100~1,000억원/1,000억원 초과 10%/12%/17%
- * 단, 중소기업 7%
- 개인사업자 최저하세(조특법 제132조②)
 - : 산출세액 3천만원 이하/초과 구간에 대해 최저한세액은 산출세액의 35%/45%
-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조특법 제132조의2)
 - : 소득세의 공제금액 및 필요경비의 합계액 중 2,500만원 초과분 배제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조특법 제133조)
 - : 양도소득세 과세기간별 1억원, 증여세 직전 5년간 통산 1억원 한도

조세특례 중복지원 배제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 투자자산 세액공제 중복 배제(조특법 제127조②)
 -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제5조), R&D설비투자세액공제(제11조),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세액공제(제2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26조) 등 12개 투자세액공제
- 감면제도 중복 배제(조특법 제127조④)
 -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6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7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 중소기업 감면(제63조) 등 감면제도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130조)

-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 배제(조특법 제128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조특법 제130조)

82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 지방세 비과세·감면: 2018년 13.6조원, 감면율 13.9%

• 주로「지방세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 일부「조세특례제한법」 및 조례 등에 규정

(단위: 억원, %)

				(11)	112, 707	
구분	합계	지방 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감면 조례	조세 특례 제한법	기타
합계	136,212 (100.0)	77,177	53,631	2,540	2,708	156
재산세	56,917 (41.8)	44,155	12,502	238	22	-
취득세	50,844 (37.3)	10,571	37,614	2,114	390	156
담배소비세	19,765 (14.5)	19,765	-	-	-	-
자동차세	4,900 (3.6)	808	1,749	50	2,294	_
주민세	1,764 (1.3)	1,002	752	10	-	_
지역자원시설세	1,401 (1.0)	790	611	1	-	-
등록면허세	500 (0.4)	86	404	10	0.003	-
레저세	118 (0.1)	-	-	118	-	-
지방소득세	(0.002)	-	-	-	2	-
지방교육세	0.5 (0.0004)	_	-	0.5	_	_

자료: 행정안전부, 「2019 지방세통계연감」, 2019.

● 최근 지방세 감면 하락세

• 지방세 감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함(「지방세법」 제28조의2)

※ '17년: 15%, '18년: 15%+0.5%, '19년: 15.25%+0.5% '20년 이후: 직전 3년간 지방세 감면율 평균+0.5%

(단위: 조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잠정)
징수액	71.0	75.5	80.4	84.3	90.5
감면액	13.0	12.9	13.4	13.6	13.4
감면율	15.5	14.6	14.3	13.9	12.9

주: 감면율=비과세·감면액/(징수액+비과세·감면액)×100. 자료: 행정안전부,「2020년 지방세지출 기본계획」, 2020



83 주요 지방세 비과세·감면 항목

● 최근 지방세 감면실적은 2018년 기준값임

항목	감면액('18년)
1. 매매용 수출용 중고차 등에 대한 감면	8,818
2.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6,931
3. 학교,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4,662
4.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3,890
5. 기업 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3,439
6.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3,296
7.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2,268
8.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2,089
9.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1,944
10.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1,226
합계	38,565 (28.3)

주: ()는 전체 지방세 감면액 대비 비중값임 자료: 행정안전부, 「2019년 지방세통계연감」, 2019.

84 지방세 세목별 비과세 감면액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160,760 (100.0)	130,029 (100.0)	130,123 (100.0)	128,798 (100.0)	134,109 (100.0)	136,212 (100.0)
재산세	47,080	48,198	48,417	51,689	54,222	56,917
	(29.3)	(37.1)	(37.2)	(40.1)	(40.4)	(41.8)
취득세	93,003	56,942	53,054	48,667	50,272	50,844
	(57.9)	(43.8)	(40.8)	(37.8)	(37.5)	(37.3)
담배소비세	9,894	12,231	16,642	18,801	19,662	19,765
	(6.2)	(9.4)	(12.8)	(14.6)	(14.7)	(14.5)
자동차세	6,624	6,779	5,260	4,874	4,961	4,900
	(4.1)	(5.2)	(4.0)	(3.8)	(3.7)	(3.6)
주민세	438	1,993	1,862	1,894	1,832	1,764
	(0.3)	(1.5)	(1.4)	(1.5)	(1.4)	(1.3)
지역자원	1,107	1,218	1,234	1,278	1,336	1,401
시설세	(0.7)	(0.9)	(0.9)	(1.0)	(1.0)	(1.0)
등록면허세	843	2,487	3,524	1,422	1,678	500
	(0.5)	(1.9)	(2.7)	(1.1)	(1.3)	(0.4)
레저세	123	109	121	168	142	118
	(0.1)	(0.1)	(0.1)	(0.1)	(0.1)	(0.1)
지방소득세	1,648	66 (0.1)	7 (0.0)	(0.0)	(0.0)	(0.0)
지방교육세	_	7 (0.0)	(0.0)	(0.0)	(0.0)	0.5 (0.0)

주: ()는 비중값임

자료: 행정안전부, 「2019년 지방세통계연감」, 2019.

85 지방세 감면 관리 규정

●「지방재정법」제28조의2(지방세 감면의 제한 등)

- 지방세 감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함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의7
 - : ('17년까지) 15.0% 목표
 - → ('18년) '17년 감면율 + 0.5%
 - → ('19년) '17~'18년 평균감면율 + 0.5%
 - → ('20년 이후) 직전 3년간 평균 감면율 + 0.5%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별 조문 등에서 100% 감면율을 규정 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재산세는 85%의 감면율을 적용 (최소납부세제, '15년 도입)

※ 단, 취득세 200만원 이하, 재산세 50만원 이하등 예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호관리)

- 지방세 특례 및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매년 2월말일)
- 지방세감면건의서 및 평가서 제출(매년 3월 31일)
- 연간감면액 100억원 이상의 신규 지방세 특례 도입에 대한 조세 관련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 평가
-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등

Part 4

조세지출

「조세특례제한법」상 2020년 일몰도래항목

86 2020년 일몰도래 항목

순서	제도명	근거법령 (조특법)	감면액 ('20년 전망)
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7조	21,311
2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105조제1항 제5호,제6호	19,391
3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63조의2	6,833
4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	제88조의5, 제89조의3	5,646
5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72조	3,741
6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88조의2	3,675
7	수도권과밀억제권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63조	780
8	전기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09조제4항	759
9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제71조	745
10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7	670
1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6조	612
12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3	603
13	노후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09조의2	510
14	연안운항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제106조의2 제1항제2호	467
15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106조 제1항제5호	326
16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30조의2	284

순서	제도명	근거법령 (조특법)	감면액 ('20년 전망)
17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제107조의3	159
18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조의2	125
19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121
20	전기 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106조제1항 제9의2호	110
21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87조의2	98
22	설비 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28조의3	94
23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제117조제1항 제1호, 제2호, 제2호의2,제2호의3, 제2호의4,제4호	68
2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3조	67
25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4	66
26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7조의3	64
27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제107조의2	40
28	농·어민이 직수입하는 농·축산·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106조제2항 제9호	35
29	도서지방 자기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제106조제1항제1호, 제111조제1항제2호	23
30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의3	21

순서	제도명	근거법령 (조특법)	감면액 ('20년 전망)
3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8
32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1조	6
33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2	1.5
34	창업자 등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4조	1
35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85조의10	1
36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제104조의26	0.7
37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0조	0.3
38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85조의8	0.3
39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 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3조의2	0.2
40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6의5	0
41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99조의4	0
42	벤처기업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제15조	추정곤란
43	개인택시용 차량 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106조제1항 제9호의3	추정곤란
44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106조제1항 제11호	추정곤란
45	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106조제1항 제12호	추정곤란
46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제136조제3항	추정곤란

[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7)

신설일자	1992. 12. 8.					
지원목적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지원내용		소득세·법인세 5~30% 세액감면 * 수도권·지방기업, 중기업·소기업 여부에 따라 감면을 차등				
감면실적	2016	2017	2018	2019°	2020⁰	
(억원)	18,643	20,603	22,214	20,357	21,311	

[2]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105①)

신설일자	1988. 12. 26.				
지원목적	영농비용 절감 등을 통해 영세한 농업 등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지원내용	비료·농약·사료 등 농·축산·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감면실적	2016	2017	2018	2019°	2020°
· (억원)	14 897	16 090	17 <i>4</i> 75	18 673	19 391

[3]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63의2)

신설일자	1976. 12. 22.				
지원목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중소기업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을 촉진하여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원내용	① 본사·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 세액감면(수도권 인접지역, 지방광역시, 지방중규모 도시 등으로 이전시는 5년간 100%, 2년간 50%) ② 본사·공장 양도차익에 대해 5년거치 5년 분할 익금산업				
감면실적	2016	2017	2018	2019°	2020°
(억원)	3,984	8,782	7,597	6,570	6,833

[4]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 (\$88의5, \$89의3)

신설일자	1975. 12. 22.				
지원목적	농업인·서민의 재산형성을 통한 실질소득 증대, 저축의욕 고취				
지원내용	- 배당소득 비과세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 - 이자소득 비과세 (1인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				
감면실적 (억원)	2016	2017	2018	2019°	2020°
	5,673	5,521	5,926	5,363	5,646

[5]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72)

신설일자	1981. 12. 31.				
지원목적	농어민 및 서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 마련 유도				
지원내용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기부금·접대비를 합한 금액에 대해 저율과세 - 과세표준 20억원 이하: 9% -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12% - '16.12.31.이전에 합병하는 경우 2년간 과세표준 40억원 초과: 12%				
감면실적	2016	2017	2018	2019 ^e	2020⁰
(억원)	2,360	2,451	2,964	3,597	3,741

[6]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88의2)

신설일자	2000. 10. 21.					
지원목적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지원					
지원내용	비과세종합저축 (원금 5천만원 이하) 이자소득, 배당소득 비과세					
감면실적 (억원)	2016	2017	2018	2019°	2020°	
	3,742	3,149	3,182	3,490	3,675	

[7] 수도권과밀억제권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63)

신설일자	1976. 12. 22.				
지원목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 중소기업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을 촉진하여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 에 기여				
지원내용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 세액감면 (성장·자연권역, 수도권인접지역, 지방광역시, 지방중규모 도시 등으로 이전시는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실적	2016	2017	2018	2019°	2020°
(억원)	775	724	811	747	780

[8] 전기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109④)

신설일자	2011. 12. 31.				
지원목적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전기자동차 기술력 확보				
지원 내용	전기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 면제(1대당 한도: 300만원)				
감면실적 (억원)	2016	2017	2018	2019°	2020€
	35	20	397	507	759

[9]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71)

신설일자	2006. 12. 30.				
지원목적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조기 이전토록 함으로써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인력의 세대교체 촉진				
지원 내용	농지·초지·산림지에 대한 증여세 100% 감면				
감면실적 (억원)	2016	2017	2018	2019°	2020°
	304	436	553	702	745

[10]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5의7)

신설일자	2018. 12. 24.				
지원목적	5세대 이동통신 투자 활성화 지원				
지원내용	기지국 시설 투자금액의 2%와 직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비율에 1/5을 곱한 비율을 합한 비율을 세액공제(3% 한도)				
감면실적	2016	2017	2018	2019°	2020°
(억원)				신설	670

[1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16)

신설일자	1997. 8.	30.			
지원목적	벤처투자시 엔젤투자 흵		확대 및 경	창업 초기기	업에 대한
지원내용	투자한 급 - 벤처기업 (5천만원	금액의 10% 등에 대한	투자금액으 5천만원 이	30~100%	소득공제
감면실적	2016	2017	2018	2019°	2020°
(억원)	134	185	296	581	612

[12]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29의3)

신설일자	2014. 12.	. 23.			
지원목적	경력단절여	성 등의 재	취업 및 육0	나 휴직 활성회	한
지원내용	세액공제	직 복귀 후 1년간 인건비의 10%(중견기업 5%)			
감면실적	2016	2017	2018	2019°	2020°
(억원)	0.06	0.15	0.4	2	603

[13] 노후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109조의2)

신설일자	2019. 12	. 31.			
지원목적	노후경유치	· 폐차 촉진			
지원 내용	개별소비세	H 폐차 촉진			
감면실적	2016	2017	2018	2019°	2020€
(억원)				신설	510

[14] 연안운항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106조의2①)

신설일자	1971. 12.	1971. 12. 29.				
지원목적						
지원 내용	공급하는 4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 경세 등 면제				
감면실적	2016	2017	2018	2019°	2020°	
(억원)	529	570	522	451	467	

[15]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106조①)

신설일자	2015. 12	. 15.			
지원목적	온실가스 t	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 정착 지원			
지원 내용	대해 부가기	내눌한 기대시장의 인장작 정작 시현 배출권, 외부시업 온실기스 감축량 및 상쇄배출권*에 가치세 면제 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등록한 것			
감면실적	2016	2017	2018	2019°	2020°
(억원)	183	545	650	314	326

[16]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30의2)

신설일자	2008. 9. 26.				
지원목적	양질의 일계	일의 일자리 창출 지원			
지원내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 1인당 1,000만원 700만원) 세액공제			
감면실적	2016	2017	2018	2019°	2020°
(억원)	15	25	143	272	284

조세지출 **>** 2000년일을

[17]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107조의3)

신설일자	2015. 12	. 15.			
지원목적	의료관광객	리료관광객 유치 지원 및 의료기관 과표양성화 리료용역 공급확인서 제출시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 라급			화
지원 내용	의료용역 공 환급	응급확인서 저	출시 미용성	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감면실적	2016	2017	2018	2019°	2020°
(억원)	91	109	137	153	159

[18]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69의2)

신설일자	2011. 7.	25.			
지원목적	국내 축산				
지원내용	양도소득세	100%감면			
감면실적	2016	2017	2018	2019°	2020°
(억원)	68	85	117	119	125

[19]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9의4)

신설일자	2014. 12. 23.					
지원목적	근로소득을	증대시키는	: 기업에 대	해 인센티브	부여	
지원내용	근로소득을 증대시키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5%(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0%) 세액공제 - 정규직 전환 근로자 추가공제 * 적용요건: ①, ② 모두 총족 ①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근로자가 있을 것(직전과서연도와 해당과세연도에 계속하여근무한근로자에 한함) ②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공제물: 대기업 5%, 중견 10%, 중소 20% - 공제금액: 정규직 전환근로자의 전년 대비 임금증기액					
감면실적	2016	2017	2018	2019°	2020°	
(억원)	158	94	133	116	121	

[20] 전기 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106조①)

신설일자	2011. 12	. 31.				
지원목적	배출이 심현	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도심내 운행빈도가 높고 매연 배출이 심한 경유버스, 청소차시내버스를 매연이 없고 청정한 전기버스로 교체 저기를 역리로 사용하는 시내버스(마음버스 포함) 고급에				
지원 내용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내버스(마을버스 포함)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감면실적	2016	2017	2018	2019°	2020°	
(억원)	14	14	48	78	110	

조세지출 **>**200년일몰

[21]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87의2)

신설일자	1976. 4.	1.			
지원목적	농어업인의	의 재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 보전			
지원내용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세·증0	라세·상속세
감면실적	2016	2017	2018	2019°	2020°
(억원)	124	122	75	93	98

[22] 설비 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28의3)

신설일자	2018. 12.	24.			
지원목적	기업의 설비	비 투자 지원	4		
지원내용	설비투자자	산에 대한 2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가득	녹상각 허용
감면실적	2016	2017	2018	2019°	2020°
(억원)			신설	24	94

[23]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117조①)

신설일자	1996. 12	. 30.				
지원목적	0	창투사 등의 주식거래비용을 낮춰줌으로써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원활한 자금 공급 유도				
지원 내용	직접 출 ② 신기술시 하여 취 ③ 농식품택 취득한 ④ 한국벤처 주권(지)(⑤ 창업·벤 벤처기입	자하여 취득 I업금융업자 득한 주권(기본 F자조합이 주권(지분) I투자조합이 분) 양도시 처전문 경영 1, 코넥스 싱	(호합 주권(지) (조합)이 신기 지분) 양도시 창업자·벤처 양도시 창업자·벤처 참업자·벤처	I술 사업자에 기업에 직접 기업에 투자: 집합투자기구 접 또는 투자	지 직접 출자 기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기 창업자·	
감면실적	2016	2017	2018	2019°	2020⁰	
(억원)	47	39	116	65	68	

[2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13)

신설일자	1984. 4.	9.			
지원목적		기관투자자의 지속적인 조합출자 참여 유도를 통해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지원내용	전문회/ 비과세	기업창투사·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신기술창업 회사·코넥스상장기업 등의 주식 또는 지분 양도치익			
감면실적	2016	2017	2018	2019 ^e	2020°
(억원)	27	16	15	64	67

[25]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04의14)

신설일자	2007. 12. 31.					
지원목적	물류전문기업 육성 및 제3자 물류 활성화로 물류산업 합리화					
지원내용	5%) 서 ② 당해연 <u>9</u> 3%(중 <u>4</u>	① 직전연도 대비 제3자 물류비용 증가분의 3%(중소기업 5%) 세액공제 ② 당해연도 제3자 물류비중이 30% 초과시 그 초과분의 3%(중소기업 5%) 세액공제 (단, 직전연도의 제3자 물류비증이 30% 미만)				
감면실적	2016	2017	2018	2019°	2020	
(억원)	64	69	83	64	66	

[26]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77의3)

신설일자	2008. 12	. 26.				
지원목적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장기간 재산권 행사의 라 정책적 차원에서 혜택 부여				
지원내용			면(토지매수? 득한 토지는			
감면실적	2016	2017	2018	2019 ^e	2020°	
(억원)	58	34	35	61	64	

[27]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107조의2)

신설일자	2017. 12. 19.				
지원목적	관광객 유치	치 지원			
지원 내용	숙박용역 공	공급확인서 기	제출시 숙박	용역 부가가	치세 환급
감면실적	2016	2017	2018	2019 ^e	2020°
(억원)	_	신설	23	39	40

[28] 농·어민이 직수입하는 농·축산·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106조②)

신설일자	1994. 12	. 22.				
지원목적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으로 농산물 우지 및 농산물 안정적 공급에 기여				
지원 내용	농·어민이 부가가치세	직접 수입하는 농·축산·어업용 기자재의 면제				
감면실적	2016	2017	2018	2019°	2020°	
(억원)	42	55	51	34	35	

[29]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106조① §111조①)

신설일자	1977. 12. 19.					
지원목적	전력용 면세유류를 통해 생활용수 부족이 심각한 도서지방에 깨끗한 식수를 공급					
지원 내용	현동조합중 교통·에너/ * 교통·에	 앙회에 직접: 디·환경세·교	I지방 자기발 공급하는 석유 교육세 면제 경우 제조장 5	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실적	2016	2017	2018	2019°	2020°	
(억원)	15.18	17	20	22	23	

[30]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69의3)

시워모션	자경농지, <i>측</i> 지원	투사용지 감단	변과의 형평을	을 고려하여 (거업인 경영
지원내용 영	양도소득세	100% 감독	<u> </u>		
감면실적	2016	2017	2018	2019 ^e	2020€
(억원)		신설	19	20	21

[3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7의4)

신설일자	2015. 12	. 15.				
지원목적	원·하청간	간 원활한 구매대금 지급 유도				
지원내용	대한 지급 * 지급기한		예율*을 적용 0.2%		지급 금액에	
감면실적	2016	2017	2018	2019°	2020⁰	
(억원)	_	3	3	8	8	

[32]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61)

신설일자	1976. 12	. 22.				
지원목적	. – .	E권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l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 과밀 해소·지역경제 활성화에 f				
지원내용	본사의 대 익금산입	지・건물 양년	도차익에 대	해 5년 거쳐	1 5년 분할	
감면실적	2016	2017	2018	2019°	2020°	
(억원)	1	3	5	5	6	

[33]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9의2)

신설일자	2013. 1. 1.					
지원목적	산업수요밎	'춤형고등학	교 등 졸업자	자의 고용 인	<u>반</u> 정을 지원	
지원내용		복직일 이: %) 세액공/		급 인건비으	30%(중견	
감면실적	2016	2017	2018	2019 ^e	2020°	
(억원)	0.02	0.05	0.3	1.5	1.5	

[34]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14)

신설일자	1993. 12. 31.					
지원목적			I자 및 벤처 의 수익과 선		금애로 해소, 형 치유	
지원내용		기술사업자, 양도차익 t		에 출자함으	로써 취득한	
감면실적	2016	2017	2018	2019°	2020°	

101

0.15 0

1

[35]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85의10)

신설일자	2010. 1.	1.			
지원목적	국유림 조	조성 지원 +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를 세액감면 2017 2018 2019 ⁶ 2020 ⁶			
지원내용					
감면실적	2016	2017	2018	2019°	2020°
(억원)	3	2	3	1	1

[36]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104의26)

신설일자	2014. 1.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출구전략 지원 나 등) 조합 등에 대한 채권포기시 해당금액 손금산입 등) 채무면제이익을 증여 또는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지원목적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출	구전략 지원	
지원내용) 채무면제이익을 증여 또는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감면실적	2016	2017	2018	2019°	2020°
(억원)	-	0.21	0.3	0.5	0.7

조세지출 > 2000년일

[37]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60)

신설일자	1976. 12	. 22.			
지원목적		대도시권 내에 있는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 과밀 해소 등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지원내용	공장 양도기			5년 분할 9	김금산입
감면실적	2016	2017	2018	2019°	2020°
(억원)	1	0.43	0.5	0.5	0.3

[38]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85의8)

신설일자	2008. 12. 26.				
지원목적		수도권 과밀			동의 집중을 기업의 지방
지원내용		d인) 양도차익 2년 거치 2년 분할 익금 산입 b) 양도소득세 2년 거치 2년 분할 납부			
감면실적	2016	2017	2018	2019°	2020°
(억원)	1.02	0.74	0.5	0.3	0.3
		:	:	:	:

[39]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33의2)

신설일자	2006. 12. 30.				
지원목적		사업전환 초기기업의 고부가가치 전략업종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지원			
지원내용	전환사업에 50% 세액	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4년간 소득세·법인세의 객감면			
감면실적	2016	2017	2018	2019 ^e	2020°
(억원)	12	0.06	0.04	0.2	0.2

[40]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16의5)

신설일자	2015. 12	. 15.			
지원목적	창업초기 등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투	자 활성화자	원
지원내용	이익에 대	업 등에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시 현물출자에 따른 대해 기타소득 과세 대신 출자로 취득한 주식 가지 과세이면 선택(양도소득세 과세) 허용			
감면실적	2016	2017	2018	2019 ^e	2020°
(억원)	_	0	0	0	0

[41]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999|4)

신설일자	2003. 12. 30.				
지원목적	농어촌 지역	농어촌 지역의 공동화 현상 해소 및 귀농·귀촌 지원			
지원내용	1세대1주택 수에서 산업	택 비과세 판정시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을 소유주택 입 제외			
감면실적	2016	2017	2018	2019 ^e	2020°
(억원)	-	0	0	0	0

[42]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15)

신설일자	2017. 12	. 19.			
지원목적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내용			1.까지 납세 자자의 제2차		한 벤처기업 면제
감면실적	2016	2017	2018	2019°	2020°
(억원)			신설	추정곤란	추정곤란

[43] 개인택시용 차량 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06조①)

신설일자	2013. 1.	1.			
지원목적	개인택시 <i>/</i> 경감	1인택시 사업자의 열악한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구입비용 1감			
지원내용	개인택시 :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감면실적	2016	2017	2018	2019°	2020°
(억원)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44]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06조①)

신설일자	2008. 12	. 26.			
지원목적			를 대상으로 부담 경감		분유에 대한
지원내용	0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액상 형태 분유 포함)에 대하 부가가치세 면제			
감면실적	2016	2017	2018	2019°	2020°
(억원)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45] 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106조①)

신설일자	2010. 12. 27.						
지원목적	초기 수요	기 수요창출을 통한 농·산촌 지역의 연료대체 유도					
지원 내용	임산물 중	목재펠릿 :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서	면제		
감면실적	2016	2017	2018	2019°	2020°		
(억원)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46]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136 ③)

신설일자	2007. 6.	1.			
지원목적			가 조성과 문학 산업 지원 숙	화예술 신규 육성	수요 창출을
지원내용	접대비 한	한도액의 20% 범위에서 손금산입			
감면실적	2016	2017	2018	2019°	2020°
(억원)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부록: 조세용어 해설1)

7

간접외국납부세액

간편장부신고자

가산세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서 정한 제반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난하여 징수하는 금액

가업상속공제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

가처분소득 개인이 자기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소비 또는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

각사업역도소득금액 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계산의 기준이 되는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과세소득금액(익금-손금)

간이과세제도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제도

간이세액표 매월분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액표

간접세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할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 대표적인 세목 부가가치세 내고법인의 자회사에 외국정부로부터 부과된 법인의 소등 등을

과세표준을 하여 과세된 세액

간주 본질이 다른 것을 일정한 법률적 취급에 있어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간주하다', '의제하다'. '본다'는 모두

같은 의미

간주공급 사실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거래를 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

간주임대료 사업자가 부동산입대용역을 제공하고 월정임대료와는 별도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전세금 등에 일정한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과세표준 및 소득금액에 포함

중·소규모개인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를 간편장부라 하며, 이것을 근거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자

감가상각비 토지를 제외한 유형·무형의 고정자산이 사용 또는 시일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점차로 감소되는 금액

감면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과세 기술상의 이유로

과세해야 할 일정한 세액을 경감하여 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

¹⁾ 조세용어해설은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세무용어사전」및 기타 문헌 등의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

개별소비세 사치성 소비의 억제 및 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하여 특정의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비세

거래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대해 과세함에 있어 재화·용역의 모든

거래단계에 과세하는 과세방법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함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결산조정 장부상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함으로 익금·손금을 인정받는 경우와 장부상에 익금·손금을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손금을 인정받는 방법이 있는데, 전자와 같이 장부상에

계상하고 익금·손금으로 인정받는 방법

결손금 기업의 경영활동결과 순자산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에 그

감소분을 누적하여 기록한 금액을 말하며 소유주의 입장에서

자본의 감소액

결손금의 소급공제 전년도에 이익이 발생해 세금을 납부한 법인 또는 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결손이 발생하면 전년도에 납부했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결손금의 이월공제 법인의 각 시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시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소금이 있는 경우 해당 결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

결손처분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권이 일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존재로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징세관서의 처분

경정청구권

고용증대세제

결정 과세관청의 처분으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과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

경정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 또는 과세관청이 결정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해 행하는 행정처분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에 정한

시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점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 공제(중소・중견

기업은 2년간)해 주는 세제. 다른 고용·투자지원 제도와 중복허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준비금으로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계상한 준비금

고정사업장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고정사업장의 유무에 따라 과세방법에

차이가 있음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교환

가치로 일반과세사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공급대가 재화 또는 용역의 교환가치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

가치세액을 계산함

공매 국가기관이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재산을 환가처분하는 바버으로써 메가재사에 대하여 부트저다스이의 매스하마자로

방법으로써, 매각재산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의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자유경쟁을 통하여 형성되는 최고 가격을 매각가격으로

정하여 매수인이 될 자를 결정하는 매각절차

공시지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해 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평가하여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 면적(m²)당 가격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과세가격 어떤 조세의 과세표준이 당해 조세의 과세물건의 특정가격인

경우에 그 과세표준

과세거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 즉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

과세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근거하여 국민으로부터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권리

과세기간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시간적 단위를 말함, 법안세법은 '사업연도',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은 '과세

28. 82/182 /1824, 45/18 7/1//18

기간', 조세특례제한법은 '과세연도' 라고 규정

과세기준일 해당 재산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기준일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임

과세단위 각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을 합산하게 되는 단위

과세대상 과세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물적요소로서 각 세법은 고유의

과세대상을 가지고 있음

과세물건 조세법규가 과세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물건·행위 또는 사실

과세소득 과세권자가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소득

과세소득 열거주의 법률에서 과세 대상으로 열거한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방식

과세소득 포괄주의 포괄적인 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방식

과세요건 납세의무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의 요건, 즉 과세물건이 납세

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계산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

하는 것

과세이연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

과세전적부심사 세무관서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해 서면통지하거나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그 통지내용물에 따른 과세가 적법

미터 갑자자에게 할더꾸고 그 중시대상들에 따른 파제가 억합 한지의 여부에 관해 납세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적부심을 청구하도록 하여 과세처분 전단계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호·구제하기 위한 제도

과세처분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행정처분

과세표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

과소자본세제 국외특수관계가 있는 기업간 일정규모 이상의 차입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

과점주주 주식회사에서 발행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를

말하며, 지배주주 또는 일반적으로 대주주라고 함

관세 재화가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

교육세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목적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도로 및 도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휘발유와 경유에 대하여 교통세를 신설하여 10년간(1994~2003) 한시적으로 적용하다가,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재

과세 시하읔 2021년까지 연장

국경세조정 간접세는 재화의 수출시에 면제 내지 환급되고, 동종의 재화가

외국에서 수입되는 때에는 국내의 간접세에 대응하는 수입 평형세가 과세됨, 이러한 수출환급세와 수입평형세를 중심으로 한 조작을 국경세조정이라 하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제도는

국경세조정이 그 근본취지임

국내원천소득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소득이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국내 원천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현산소득분인 아니라 국외현산소득에 내하여 소득제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지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짐

국제거래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오혀지사 또는 모혀지사이 매매 이대한 요여이 제고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차용 기타 거래자의 손의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

국세우선징수권 국세채권과 다른 공과금 및 기타 채권이 동시에 납세자의 재산에서 강제징수절차에 의하여 징수되는 경우에 국세채권을

다른 공과금 및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

근거과세 납세의무자가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세

요건을 확정하여야 한다는 원칙

근로소들인 경우에는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를 확인하는 것이 근로소득공제 어렵기 때문에 실액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당해 근로소득을 얻기

위하여 통상 소요되리라고 예상되는 표준적인 금액을 공제하는 필요경비의 표준공제만을 허용하는데 이를 근로소득공제라 함

근<u>로소</u>득금액 근로소득수입금액(급여총액)에서 필요경비적 성질의 각종 공제를

하 금액

웍정급여액이 잌정규모 이하인 근로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근로소득 세액공제

위한 제도, 근로소득이 있는 소득자의 산출세액에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함

근로장려세제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국가가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 (EITC)

연계형 소득지원제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기준금액

(2천만 원)을 기점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

금지금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99.5% 이상인 금을 말하며 워칙적으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왔으나 금시장 양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일정요건의 금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특례제도

기간과세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파악된 유량(flow)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기본관세 법률에 의해 장기간 적용되는 관세

기본공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특별한 절차없이 종합소득

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종합소득공제의 일종

기부금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贈與)의 가액

기업회계기준 기업이 회계처리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으로서 기업회계의 실무에서 관습으로 발달한 것으로부터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

하다고 인정된 회계원칙

기장의무 과세요건과 과세대상에 대한 확인과 계상을 위하여 납세 의무자의

시업활동에 관한 거래행위등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세법에서 규정.

기장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장부는 비치해야 함

기장세액공제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의 성실기장을 유도하기 위해 당해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세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기장세액공제제도라 함

기준경비율 과세관청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적용하는 표준

적인 필요경비의 비율

기준시가 토지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 공시지가, 건물·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건물의 신축가격·

증자(자), 단골 노래드글 및 강답증 단골는 단골되 단국가(국 구조·용도·위치·신축면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 창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주택의 경우에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주백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 기타 토지·건물 외의 자산은 대통령령이 지정한 방법에 의해

고시된 가액

기초공제 과세표준의 계산을 위하여 과세대상의 가액에서 일정금액을

기초적으로 공제하는 것

기타소득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양도소득 이외에 일시적·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긴급관세 특정상품이 자국에 급속도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심각한

손해를 보게 될 때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부가 긴급히

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관세

기한후신고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후신고라 함

L

납기전징수 납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국세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期限 利益)을 박탈하고 납부기한 전에 조세를 징수하는 징수의

특례제도

납부기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할 금전 등의 채무이행기한

납부세액 일반적으로는 세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여 해당 세목(稅目) 의 과세표준의 신고와 함께 정부에 납부하여야 함 세액

납세의무자 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가 있는 자

납세의무의 승계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본래의 납세자로부터 다른 자에게로

납세의무가 이전되는 것을 말함. 이것은 본래의 납세의무가 소멸하고 권리·의무의 포괄승계가 일어나는 법인합병이나 상속의 경우에 조세의 납부책임도 의무의 하나로서 승계

시키고자 하는 것

납세자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 포함)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

납세자보호관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 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세무조사권남용

금지,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비밀유지,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납세지 납세자와 국가·지방자치단체간의 법률관계의 이행장소를 결정

하는 장소적 기준

납세보증인 납세자의 국세·기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

내국법인 대한민국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대한민국 국내에 주소를

가진 법인

내국세 국내에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며, 국세

중에서 관세를 제외한 것을 총칭

내국신용장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

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

농어촌특별세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세하는 목적세

누진세율 과세표준금액이 커짐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세율 구조를 말함. 하나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단순누진율과 과세표준을 몇 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초과

누진율이 있음

누적효과 중간거래단계에 면세가 적용되고 최종거래단계에 다시 부가

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면세로 인해 경감된 세액뿐만 아니라 면세의 전단계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액이 추가로

과세 됨으로써 오히려 중복과세되는 현상

С

다국적기업

국적이 다른 회사가 모여서 형성하고 있는 기업그룹. 다국적기업 내의 기업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전가격을 조작하거나 조세회피처나 저세율국을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하므로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법인세법」에 이전가격세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다단계거래세 생산 및 분배에 이르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각 단계별 외형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유통세, 부가

가치세가 모든 거래단계에 과세된다는 점에서 다단계거래세임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가 부과된 후 10년 이내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또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육 적용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일정 규모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는 종전의 표준소득률 개념과 유사한 '단순

경비육'을 적용

담배소비세 담배를 소비할 때 과세하는 소비세. 담배소비세는 1989년부터

지방세로 창석되어 시·군의 독립세로서 과세

납세의무자가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의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가 담세력

하는 경제적인 능력

담세자 조세의 최종적 그리고 실질적인 부담자

대리난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용역공급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는 제도

대손충당금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상품·제품의 판매기액의

>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시언수인금액의 미수액)・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어음상의 채권・미수금 기타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의 대손에 대비

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충당금

동언기언에 대해서 번인세 및 소득세륵 부과하지 않는 대신에 동언기언 과세트레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

동족회사 친족이나 사용인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만으로 그 주식

또는 지분의 대다수를 소유하는 회사

재산권, 기타 권리의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할 때 등록면허세

또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가·등록·심사 등 행정청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중 도세로서

보통세

레저세 경마, 경류 및 소싸움의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발매가액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

무열티수익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은 장기성

자산의 사용대가로서 관련된 약정의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

리人계얀 리스제공자가 특정자산의 사용권을 합의된 기간 동안 리스

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

매입세액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중 일반과세자에 대한 납부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세액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중에 공급된 재화 또는 매축세액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면세 조세의 전부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

면세사업 넓은 의미로 면세사업은 조세법에서 면세로 규정한 사업이라고 정의학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용역의 공급을 영위하는 사업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면제되는 재화 면세재화

명목세율 세법상 정해진 법정세율

명의신탁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명의가 이전되지만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될 뿐이고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신탁

모전세 특정한 사용목적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

무제하난세의무자 전세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을 무제한납세의무자

라하며 제한난세의무자와 상대되는 개념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이행하는 것 물납

물적납세의무 납세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국세 등을 징수

미납부가산세 조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납부기일 내에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

미등기양도자산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할 때의 당해 자산으로, 주로 투기혐의자에 대한 부동산거래 추적과정에서 나타나는데.

양도소득세계산시 최고세율(70%)이 적용됨

미등록가산세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기준금액에 일정한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행정벌적 성격을

가지는 과태료

및 공기가속 중 마장면서에 대하여 1,000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교제하는 거유 마하

공제하는 것을 말함

미실현이익 아직 판매되지 않아 그 가치가 실현되지 않은 상태의 이익.

물가상승시 보유자산의 평가이익 등이 해당함

Н

법정납부기한

법정상속분

보복관세

발생주의 발생주의는 현금주의와 상반된 개념으로 현금의 수수와는 관계 없이 수익은 실현되었을 때 인식되고, 비용은 발생되었을 때

인식되는 개념

배당세액공제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한산된 배당소득금액의 일정한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

배당소득 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주주나 출자자가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받는 이익

배우자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공제대상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연 100만원을 공제하는 것

법인세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과 같이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의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법정기부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으로, 이웤결손금이 없는 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기부금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납세자가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할 수 있는 기한을 세법에서 규정

법정 상속분은 상속분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것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 의 권익을 부인 또는 제한하거간 기타 우리나라에 대하여 차별 적인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참해되는 때에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

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할증관세

보세구역 외국물품을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채로 둘 수 있는 장소로서

일정한 내국물품도 보세구역에 한하여 저장할 수 있음. 외국 물품이 수입되었을 때 보세구역에 있는 동안은 관세징수를 유예 받고 여기서 수출될 때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국내에 옮겨져 내국묵품이 된 때에야 과세학

보세제도 일정한 지역을 제한하여 관세 특히 수입세의 부과를 일시적으로

유보한 상태에서 장치, 검사, 제공, 가공, 전시, 건설, 판매, 운송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상의 제도

보통징수 지방세의 징수방법은 보통징수와 특별징수방법으로 구분되는데.

보통징수라 함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함

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법정보험료를 근로소득 금액에서공제하는 것임, 연금보험료공제는 기타소득공제로

종합 소득금액서 공제하며, 근로소득자의 보장성보험료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대별됨

본선인도 약속된 화물을 구매자측이 부른 선박에 싣고 본선에서의

화물인도완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판매자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상운임이나 선적이후의 비용은 구매자측이 부담함

(FOB: free on board)

본세 각종 세금에 대한 가산세·가산금 등을 계산할 때 그 기초가

되는 본래의 세금

부가가치세 재화·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간접세

부가가치율 일정기간 안에 창출된 부가가치액을 총매출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

부가세 다른 조세(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정한 세율로서 그

본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 현행 세법상 부가세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등이 있음

부과과세제도 조세의 확정 권한을 과세권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제도로, 현재

상속세·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고 있음

부담금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

부담부증여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을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등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상

으로나 기업회계기준상 그 내용이 보편타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세무계산상 그 내용과 성질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나 계산에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것

분납 납부할 세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거나 납세자가 재해 또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

분류소득세제 소득을 몇 개의 발생원천별로 구분하고 각 소득원천에 따라

단일비례세율 또는 복수비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분리과세 종합과세되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일정률의 원천징수를 하고

나면 종합소득 신고시 이를 합산하지 않는 것

비과세소독 특정의 소득에 대해서는 공익상 또는 사회·경제·문화·후생 등 정책상의 이유 또는 이중과세의 배제 및 기타 과세기숙상의

이유 등으로 과세하지 않는 과세제외소득

비사업용토지 나대지·부재지주 소유 임야 등을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수단의 투기적 성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비영리법인 한숙·종교·자선·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경제적 이익을 도모

하는 것이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人

사내유보 기업의 이익처분 중 사내에 잔존하고 있는 것을 사내유보라 함. 사내유보는 상법이 적립을 강제하느냐, 안 하느냐의 구분에 따라 강제의 사내유보와 임의의 사내유보가 있는데 전자에는

>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이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별도 적립금을 비록한 여러 가지 적립금이 있음

사업소득 사업이란 특정인의 위험과 계산 아래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서 경영 주체의 의사나 사회적-개페과 사니까계로 더가 도조이 해의를 계소, 바보처며 해하는

객관적 사실관계로 보아 동종의 행위를 계속·반복하여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사업에서 얻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소득을 사업소득이라 함

산림소독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육림사업을 육성·장려하고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소득을 종합소득에서 제외 하여

별도로 산림소득세로서 분류과세하고 있음

산출세액 각 세목별 과세표준에 해당 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

하여 계산된 세액

상속세 상속개시라는 사실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 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인

에게 과세하는 조세

세금계산서 시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사업사의 등록인으와 영향 또는 영향, 등답된는 사의 등록인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및 작성 연월일 등이 기재된 계산서를

말하며 일종의 세금영수증임

세무조정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관련 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사항을 가각하여 세무회계상의 과세소등을 계산하는

젘차

세액감면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조세 정책상 세액을 감면해주는 것을

말하며 각 개별세법(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해 그 요건을 명시

세액공제 과세소득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 특정목적에 의해 세법에서 규정한 액만큼 공제하는

것을 말함

세월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과세표준(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에

곱하는 비율

소급과세의 금지원칙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법규 등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새로 제정된 법규

등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 원칙

소득공제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각종 소득금액은 각종 소득과

관련되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산출하는데, 이렇게 산출된 각종 소득금액에서 개개인의 특수과정을

고려하여 다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

소득처분 세무조정시항으로 발생한 소득이 법인 내부에 남아 있으면 이를 기업회계상 순자산에 가산하여 세무상 순자산을 계산하고.

이들 기업회계정 군자인에 가인하여 제구경 군자인들 계신하고, 법인 외부로 유출되었으면 소득귀속자를 파악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제도

손금불산입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금에는 해당 하지만 그 거래의 성질이 자본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과 조세

하시만 그 거래의 성실이 사본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과 소세 이론상 조세정책상 또는 사회정책상의 이유 등으로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산출에 있어 세무조정과정에서 그것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과세소득으로 계상해야 하는 것임

손금산입 기업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조치로서 기업의 순자산이 감소하지 않았음

에도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는(즉, 자본환급에 의한 순자산의 감소요인도 아니며, 영업거래에 의한 순자산의 감소요인도

아닌 것을 손비로 인정하는) 항목

시가표준액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

평가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며,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 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

신고난세제도 난세의무자 난세신고로 난세의무가 확정되는 제도 즉 난세의무

> 확정의 권한을 1차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부여하고 과세권자의 확정권은 2차적·보충적 지위에 유보하는 제도를 말함.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일부

세목을 제외하고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신고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은 소정기한 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금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신고조정 결산시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익금 또는 손금을

세무조정에 의해 과세소득에 반영하는 것

세번의 해석 및 과세요건의 검토·확인은 조세공평이 이루어 식직과세의 워칙

지도록 실질에 따라야 한다는 세번 고유의 워칙

실효세율 세법상 정해진 법정세율에 대해서, 각종 공제·면세점제도· 조세특별조치 등에 의하여 실제의 세부담률이 차이가 있을 경우 법정세율에 대한 실제의 세부담률을 말하며, 실제의 세부담의

정도록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됨

심사청구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국세(국세기본법상)에 있어서는 국세청장, 지방세 중 도세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시·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불복절차

심판청구 국세에 관한 불복절차 중의 하나인 심판청구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불복절차로,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거나 직접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1심급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또는 선택적 2심급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심판청구)이 됨

0

일반적으로는 토지 등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 유상으로 양도가액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가격

채권당보의 목적으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양도담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나, 채무자가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화하는 방법에 의한 담보

양도소독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데, 이에 대한 과세는 자산의 가치상승에 따라 자산소유자에 귀속되는 이익을

소득으로 하여 그 자산이 소유자의 지배를 떠나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기회로 과세함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금액에서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주식(기타

무동산, 무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사산의 양노소득, 수식(기타 자산 제외)의 양도소득별로 연 1회에 한하여 250만원을 공제

양도소등금액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 등)와 장기보유특별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토지, 건물, 대주주의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양도차익 소득세법 및 특별부가세(법인의 경우) 과세대상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으로서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의 단계에서 산출되는 금액

양하관세 다자간 협상 과정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관세로, 일단 관세를 양하하면 그 이하로 낮출 수는 있어도 더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음

업무무관경비 기업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의 취득·관리비용

등의 경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과세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서 인정하지 않음

연결납세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법적으로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이들 관계회사

> 그룹에 대하여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합쳐서 계산하여 실질적 조세부담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역진세율 소득액 또는 재산액이 적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조세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세율

연대납세의무 원칙적으로 하나의 납세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과 개별세법은 이를 변형시켜

성을 기미하는 것이다 국제가는 합의 기관에 다른 이를 받음 납세의무 중 납부의무를 확장시키는 방법으로 사용

연부연납 조세의 일부를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연장하여 주는 제도가 연납인데, 연부연납은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는 것

영세율 세율이라 함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종가세의 경우) 또는 과세표준의 단위당 금액(종량세의

경우)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세율이 영(0)인 것

예난세액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중간예납기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에 상당

하는 금액

예정신고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와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

> 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기간 경과 후 신고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은 이를 과세기간 중간에 신고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를

예정신고라 함

외국법인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에 대응되는 개념

인도

이웤결손금

유입 및 보험료포함 무역거래에서 수출업자가 화물이 목적지에 인도될 때까지 운임과 보험료를 지급 하는 가격조건(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당학 세액을 미리 국가록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

워천징수의무자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일정한 사업소득 및 법인세법상 이자소득 등 원천장수대상인 소득을 지급하는 자

유산과세방식 피상속인의 유산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

유산취득과세방식 유산을 취득한 각자의 지분별로 별도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는 방식

응능부담의 원칙 조세는 행정서비스를 받는 이익의 양과는 무관하게, 그것을 부담하는 자의 담세력에 따라 부담되어야 한다는 조세부담원칙

응익부담의 원칙 행정서비스의 이익을 받는 자는 그 이익의 양에 따라 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조세부담원칙

의제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매입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매입기액 중에 일정 한 매입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 일정액

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생긴 결손금으로서 전사업연도로부터

이웍된 결소금

이월공제 조세감면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그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각 과세연도에 이웤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한 것

이의신청 행정작용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그 처분청에 대해 취소.

변경을 위한 재심사를 구하는 절차

이전가격세제 기업이 모회사 등 국외 특수관계자와 거래록 하면서 그 거래

가격을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적용해 과세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그 거래에 대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해 조세를 부과하는 것

이중과세 동일한 과세대상사실에 대해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의 총칭임. 예를 들면, 법인소득에 대해서 법인세의 과세와 배당수입에

예를 들면, 법인소득에 대해서 법인세의 과세와 배당수입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 상속세과세대상재산에 피상속인의 생전증여재산이 가산된 경우의 상속세와 가산된 증여재산에

과해진 증여세 등이 있음

이월결손금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생긴 결손금으로서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

익금불산입 법인세법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제외하고 기업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모두 익금으로 간주하는 순자산증가설에

의거하여 소득개념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 중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명문규정을 둔 사항만을 익금으로 간주하지 않는 바, 법인세법에서 익금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규정한 사항

익금산입 기업회계상으로는 수익을 구성하는 대상(또는 요소)이 아니나

세무회계상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수익, 즉 익금에 부가적으로 포함시키는 것

인적공제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득자 등의 가족상황

등 인적상황을 감안하여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

인지세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거나, 재산권에 관한 추인 또는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증서

1통마다, 통장 및 장부 1권마다 소정액의 인지를 첨부하도록

하는 수입인지를 통하여 과세하는 조세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대신 5억원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를

일괄 공제라 함

일감 몰아주기 모기업의 대주주가 자신의 특수관계자가 대주주로 있는 계열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어 그 기업의 매출과 이익을 높이는 것

일반소비세 일반적으로 재화 및 서비스의 소비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

ᆽ

자가공급 간주공급의 한 형태로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를 말함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에 대해 공제해주는 제도

되는 경우에는 2억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음

자동차세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시세로서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후불제적 세금

자산소득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의 소득종류 중 소유자산의

운용으로부터 생긴 소득, 즉 이자소득·배당소득을 말함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은 2개 이상의 국가가 통합하여 상호간의 무역에 대해서는 관세나 수출입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역외 제국과의

내해서는 관세나 수울입세안을 폐시하는 안면, 역외 제국과의 무역에 대해서는 각국이 각각 독자의 관세, 기타 통상규칙을

적용하는 제도

자회사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할 때에는

다른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얻게 되므로, 투자회사를 모회사라

하고 피투자회사를 자회사라고 함

잠정관세 일정기간 잠정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의 관세로, 잠정관세가

기본관세보다 우선 적용됨

장기보유특별공제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보유자산에 대하여 그 양도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에 일정액을 공제해 중으로써 건전한

부동산의 투자행태 내지 소유행태를 유도하려고 하는 세제상의

장치

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에 대하여 그 소유자

에게 부과하는 조세로 토지·건축물·주택 등 재산에 과세하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됨

재정환율 한 나라의 환율을 산정할 때 그 기준으로 삼는 특정국기의 환율을 기준환율이라고하는데, 이것을 이용하여 제3국의 환율을 가접적

기군완팔이다고아는데, 이삿글 이용아어 제3국의 완팔글 건접?

으로 계산한 환율

절세 세법이 인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세액의 감소 내지 경감을

도모하는 것

점감구간 근로장려세제에서 일정 소득구간 이상에서는 근로장려금이

점차 줄어드는 구간

점증구간 근로장려세제에서 근로 유인 제고를 위해 근로소득이 늘어날

수록 근로장려금도 증가하는 구간

접대비 기업활동비중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교제비・

기밀비·사례금 등과 같은 항목의 지출금을 뜻함

정상가격 생산원가에 적당한 평균이윤을 부가한 가격으로,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상호이익을 도모하는 이상적인 가격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대신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

제척기간 법정기간의 경과로서 당연히 권리의 소멸을 가져오는 것으로

권리의 존속기간이 예정되고 그 기간만료에 의하여 권리가

당연히 소멸

제한세율 세율을 정함에 있어서 초과할 수 없는 최고의 세율만을 규정한

것을 말함

조정관세 특정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시장이나 산업기반을 교란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관세율을 상향조정하는 것

조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체가 그의 경비 충당의

재정조달 목적으로 그의 과세권에 기하여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급부이며,

특별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님

조세부담률 한 나라의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조세총액의 비율

조세심판원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인 심판청구를 심리·결정하는 기관으로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있어 공정성과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세(관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처분청인 국세청이나 관세청과

분리·독립된 제3기관

조세조약 국제간의 거래에 있어서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동종의

조세를 중복하여 과세하게 되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간에 체결한 이중과세방지조약

조세특례제한법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

조세평등의 원칙 조세평등주의는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국민들 사이에 배분 되도록 세법을 제정하여야 하고 조세법록 관계의 각 당사자

뇌노독 세법을 세성하여야 하고, 소세법률 관계의 각 당사사 로서의 국민은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세법의 해석·적용상의 공평)는 원칙

조세회피처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tax haven)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해당 실제발생

소득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

조세회피행위 어떤 경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정한 행위를 취함에 있어서

본래대로라면 채택했을 행위형식을 채택함이 없이 조세부담의 경감목적으로 다른 이상한 행위형식을 채택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히 경감하는 행위

종가세 과세물건의 가격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종량제 물품의 수량·길이·면적·중량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

종합부동산세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부담능력에 비례하는 보유세를

부과하는 조세

주민세 지방세의 하나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과 그 지역에 사무소나

사업소를 둔 법인, 또는 그들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주세 주세번에 따라 주류를 제조장에서 축고하거나 보세구역으로

부터 인취하는 때에 그 수량 또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소비세

중간예납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과세기간 중간에 중간예납기간을

정해 세액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

증권거래세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

증여세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에게

증여받는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

증여재산공제 친족 간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분여받은 과세권에 기하여 지방

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없이 갖제적

으로 과징하는 조세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하여 등록세, 레저세 등 일정한 지방세

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 2001년 신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 포함)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함으로써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

지방소득세 그 지역에서 발생한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자체가

과세권을 갖고 부과, 징수하는 세금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

지방소비세 2010년부터 신설된 세목으로 지방재정의 자주재원 확충과 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세원확충 효과가 자치단체 세업으로 연결되는 지방재정의 선수화 구조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액의 21% 적용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과 주민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자나 자원을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

지점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지점)에 대하여 일반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하는 일정한 부가세(surtax)

지정기부금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문화·

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징수권 법규의 근거에 의하여 권한있는 기관이 조세·수수료·과료·벌금

등을 받아들이는 것을 징수라고 하고,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납세자에게 요구하여 그 징수를 도모하는 권리를

징수권이라 함

징수유에 납세자에게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곤란케 하는 개별적인

특별사정이 납기개시 전 또는 납부기한 도래 전에 발생하여 조세채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할 때에는 납부고지의 유예, 분할고지 또는 고지된 조세의 납부기한의 연장 등으로 납세자에게 기하의 이익을 부여하는 짓수의

특례제도

징수의무자 각 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자

-

참가압류 과세관청이 국세징수를 위해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의하여 압류된 때에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다른 기관의

안류에 참가하는 것

청산소득 법인이 사업수행을 종결짓고, 그 시점에서 채권·채무를 청산

하고 출자자에게 반제할 것을 반제하고도 남은 재산이 있을

때 이것을 청산소득이라고 함

체납처분 조세 및 기타 공법상의 채권이 납부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행정상의 강제력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우, 영성성의 경제력에 의하여 답제자의 재선들 업뉴아거나 교부청구를 하고, 교부받은 금전으로 국세채권이나 공법상의

채권 등에 충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절차

초과누진세율 과세표준의 금액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고, 높은 단계로 올라감

에 따라 점차적으로 각 초과단계마다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

하는 누진 세율

초과반환금 근로자가 퇴직이나 탈퇴로 인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

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

총수입금액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사업활동·소비대차·자본출자·근로의

제공·부동산의 대여 등으로부터 유입되는 대가의 합계액

충당금 아직 지출은 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연도의 부담이 될 금액에

대한 준비로서 추정한 금액을 불특정형태의 자산으로 유보하고

있는 것

최저하세 사업소득이 있는 납세자(개인·법인)가 아무리 많은 공제나 감면

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

취득가액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필요 경비로 공제하는 금액으로서, 취득의 대가 또는 취득의 대가로 의제하는 것

부동산·차량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통과정에서 담세력이

노출되는 취득자에게 조세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 부과되는 조세

E

취득세

수입품에 대하여 국내산업 보호나 물가의 안정 내지는 경제적인 탄력관세

이유로 국정관세율을 증감・변경할 수 있는 관세

타련세육 정부가 번륙로 정한 기본세육을 탄결적으로 변경하여 운용하는

세육

탈세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정한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온 일체의 행위

퇴직급여충당금 장래에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하게 될 퇴직금을 미리 충당금의

형태로서 계상해 놓은 것

퇴직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근무하던 직장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함 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명예퇴직수당, 단체퇴직보험금

의 총칭

퇴직급여액이 있는 자에 대하여 퇴직소득 특별공제록 한 금액 퇴직수등공제

에서 근무 연한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

지방세의 징수에 있어서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지정된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

부터 지방세를 징수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것

특별회계 국가의 회계 중 특정한 세입으로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하는 회계

특수관계인 일반적으로 회사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에 쓰여지는 용어

특혜관세 어떤 특정국이나 특정지역에 대하여 통상관계를 유지·촉진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일반 수입품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

파생금융상품 기초항목인 본원적 금융상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 이상의 금융

위험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효과가 있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금융상품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성실사업자(성실사업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 7만원)에게 항목별 세액

공제 대신 연간 12만원을 세액공제

표준세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지 아니학 수 있는 세육

표준소득율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가 한 해 동안 얼마나 벌었는지

추정하기 위해 세무당국이 정해놓은 기준. 회계장부를 작성 했더라도 장부가 너무 부실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도 사용됨

파상속인 상속의 목적이 되는 재산(권리·의무)의 원래의 주체를 피상속인 이라 하고, 상속에 의하여 재산을 승계받는 자를 상속인이라 함

피합병법인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당사회사 중 합병으로 인하여

수명 하는 번인

필요경비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소득세법에서는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하여만 필요경비를 인정

ᇹ

합산과세 별개의 과세단위를 서로 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초과누진세율로 과세 하는 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제도에

하는 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제도에 있어 소득 또는 과세기액을 특수관계인 등에 분산하여 누진세율 의 적용을 회피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 채택하는 제도

할당관세 수입물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로, 국내외

여건에 유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탄력관세의 일종

협정세율 1국이 타국과 협상해서 체결한 통사조약 또는 관세계약에

의하여 정한 세율

확정신고 개인, 법인을 불문하고 조세채권·채무를 확정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신고남세제도에 있어서 대표적인 남세신고임

환가처분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잔여재산

가액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토지・건물・기계 등의 자산을 현금화

하는 행위

환급 돈이나 물건을 되돌려 주는 행위로 환부라고도 말함. 납세 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했거나 착오에 의해 납부의무 없는 금액을 납부한 경우, 그리고 세법에 의해 환급해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부가)가치세에 있어서 영세율이

환급해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부가가치세에 있어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입세액 등)에 조세채권자(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납세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 행위를 환급이라 함

환수효과 중간거래단계에 영세율이 적용되고 최종거래단계에 다시 부가 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로 인한 면세액이 최종 거래단계에 모두 환수되어 종전의 영세율 효과를 취소하게

되는데, 이를 환수효과(또는 취소효과)라 함

환지처분 토지개량·개발이나 도시계획 등의 사업 결과 그 토지상에 존재

하는 종래의 소유권 및 기타 권리에 변동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이에 해당하는 다른 토지나 금전

으로써 청산하는 처분

회계공준 회계가 이루어지는 경제적·사회적·정치적인 환경을 귀납적으로 고참하여 도출이 되는 환경공주으로서 회계이론을 연역적으로

과일이어 도울이 되는 환경충분으로서 외계이론을 연락적으로 형성하고 전개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기본명제 또는

전제조건

1세대 1주택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즉 거주자와 배우자의 지존되속 및 은

형제자매와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 하고, 일정기간(1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을 말함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재정경제통계 시스템(www.nabostats.go.kr)을 구축하고 대국민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통계시스템(NABOSTATS)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재정통계 및 경제 통계 등을 One-Stop으로 제공하는 통계정보시스템으로, 재정·경제 통계 외에도 입법현장에서 필요한 위원회 및 소관부처별 주요 정책과 관련된 통계, 북한통계, OECD·IMF 등의 국제통계를 제공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 예결산 심사와 관련한 수정내역, 부대의견, 시정요구 등 국회의 재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국회 삼사연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통계시스템(NABOSTATS)에서는 2020 조세수첩에 수록된 통계를 포함하여 다양한 통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자는 「국회법」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 (2020. 8. 12.)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연락처: 추계세제총괄과 (Tel) 02-6788-3776 (E-mail) etcd@nabo.go.kr

2020 조세수첩

발 간 일 2020년 8월

발 행 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이종후

편 집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발 행 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대한민국국회

TEL. 02·6788·3776

디자인·인쇄 경성문화사 TEL. 02·786·2999

ISBN: 978-89-6073-322-0 92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0



